

# 감사보고서

-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

2023. 3.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고흥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제190조에 따른 道 정기종합감사를 '19년 9월 이후 받지 아니하여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 「조직·인사», 「예산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 2. 감사대상 및 범위

-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고흥군 본청, 직·사업소, 읍·면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

###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 4. 감사기간 및 인원

- '22. 11. 23.부터 12. 1.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 '22. 10월말 기준 )

인 구	면 적	조 직
62,048명 (전남의 3.4%)	807.3km <sup>2</sup> (전남의 6.5%)	○ 2실, 15과, 1단,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6읍면 ○ 행정구역 : 2읍 14면

※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사 업 소(2) : 상하수도사업소, 분청문화박물관

###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 '22. 10월말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원	833	1	791	2	39
현원	811	1	775	1	34
증감	△22	-	△16	△1	△5

### 3.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22. 10월말 기준)

구분	2020	2021		2022. 10월	
	본 예산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6,546	7,120	574 (8.7%)	8,045	925 (12.9%)
일반 회계	6,381	7,004	623 (9.7%)	7,937	933 (13.3%)
특별 회계	165	116	△49 (△29.7%)	108	△8 (△6.9%)

구분	2020	2021		2022. 10월	
	최종 예산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8,891	9,063	172 (1.9%)	9,310	247 (2.7%)
일반 회계	8,671	8,902	231 (2.6%)	9,149	247 (2.7%)
특별 회계	220	161	△59 (△26.8%)	161	0 (0.0%)

## III. 감사결과

### 1. 감사결과 총괄

- 총 61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를 확인

(단위 : 건 /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건설 링 (라)		
	합계 (가)	고발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F)	시 정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 =a+b)	소계 (a)	회수	부과 추징	감액									기타
61	22 (30명)	1 (1명)	2 (2명)	19 (27명)	38	19 (1,842)	10 (1,842)	3 (45)	2 (304)	2 (61)	3 (1,432)	9	16	-	-	3	-	1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인사 분야

- ①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어긋나게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진행한 사례에 대하여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

#### ▶ 세출 분야

- ① '19년 0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일상경비 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20년 0월 일상경비로 PC를 구입하면서 횡령한 사례에 대하여 관련자 고발·중징계 및 훈계, 시정·주의를 요구

#### ▶ 사회복지·보조금 분야

- ① 장제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1억 5,629만원을 과소·과다 지급한 사례에 대하여 추가지급·환수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
- ②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및 이자액 11억 4,150만원을 미반납한 사례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

## 2. 처분요구 요약

### ①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부당 사용

- 위 군(○○과 등 29개부서)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총 1,516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등에 공무원 및 공무원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등에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에게는 남은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무원 등 근로자에게는 남은 휴가일수를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13개부서)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93명(공무원 25명, 공무원직 등 근로자 68명)이 112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허가를 득한 후 건강검진을 미 실시했는데도 연가처리를 하지 않고 공가로 그대로 처리
  - ※ '19년 50회, '20년 46회, '21년 16회 / 2회 이상 중복자 19명
  - 그로 인하여 부적절한 공가 사용분에 대해 연가보상비 등 명목으로 약 1,244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

☞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1,244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및 건강검진 관련 공가사용에 대한 직원 복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②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단)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4월말/10월말)로 나뉘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공무원 25명에 대한 징계의결 업무를 추진

#### 1. 평정단위별 서열순위에 어긋난 전체 평정서열 결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기초하여 전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평정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근무성적평정 시 '19년 하반기 0급 00명, '21년 상반기 0급 0명 등 총 00명에 대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어긋나게 전체 서열순위를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이 최대 5점 과다 부여되고, 최대 8.3점 과소 부여
  - 또한 근무성적평정점 잘못 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도 최대 0.85점이 과다부여되고 최대 1.41점이 과소부여
  - ※ 전체 근무성적평정서열 변경으로 인해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미발생
  - 그로 인하여 근무성적평정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는 등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 2.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2 제5항에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40%) 비율대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등급별 분포비율(수, 우, 양)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평정점을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근무성적평정 시 '19년 하반기에 00명(전체 748명의 00.0%), '20년 상반기에 00명(전체 766명의 0.0%), '21년 하반기에 00명(전체 752명의 0.0%), '22년 상반기에 00명(전체 784명의 00.0%)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당하게 부여
- 그로 인하여 정당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부여되지 않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등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 초래

### 3.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1(징계기준), 별표 2의2(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항에 임용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을 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단)은 '22. 00. 00. ○○○○○○○○으로부터 ○○○급 ○○○의 ○○○○ ○○○○○○ 결정을 통보받았는데도 **1개월 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고**, '22. 00. 00.에서야 경징계 의결 요구
  - 또한 ○○○는 '22. 00. 00 ○○○급 ○○○에 대한 경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는데도 **'22. 12. 1. 감사일까지 징계의결 절차를 미진행**
- 「고용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7조의2에 **이 규정의 사항은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하고, 근로자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사용부서의 담당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 00. 00. ○○○○○○으로부터 ○○직 ○○에 대한 ○○○○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는데도
  - '22. 12. 1. 감사일까지 사용부서(○○○○○○)에 위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징계의결 절차가 미진행**
-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 근무성적평정과 징계의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1명 **“경징계요구”**, 前 담당자, 前 팀장, 前 과장 등 3명 **“훈계요구”**

☞ 징계절차가 미진행 중인 2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평정단위별 서열순위를 준수하면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고, 등급별 분포비율과 그에 걸맞는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며,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주의요구”**

###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등 형식적 운영

-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소속 공무원의 인사·징계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1.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에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회의**는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12월부터 '21년 12월까지 ○회의 승진인사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들의 발언사항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위원 간 상호 자유의견 개선'이라고만 기재 후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
  - 그로 인하여 어떤 논의와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 초래

#### 2.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5급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12월부터 '22년 7월까지 ○회의 인사위원회 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심사를 해야 하는데도
  - ○○과장이 **승진대상자로 우선 언급한 자만 인사위원 간 논의 후 승진자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
- 그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이면서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기회 없이 탈락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심사를 하도록 **“주의요구”**

#### 4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파)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 및 사후관리 중
-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등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과잉 지급분은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파)은 '00. 0. 00. 사망한 ○○○에게 장제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00년 00월부터 '00년 00월까지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며 **188명에게 1억 5,082만원 과소 지급, 18명에게 547만원 과다 지급**

(단위: 명/만원)

구분	사유	과소		과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88	15,082	18	547
장제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	178	14,180		
장애수당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및 사망한 이후 지급	7	32	3	12
장애연금	차상위자 만65세 부가급여 과소 지급	2	840		
기초연금	사망한 이후 과다 지급			15	535
생계급여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1	30		

-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군수는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확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파)은 '21~'22년에 장애인연금 사업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을 미수립하였고, '21년에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을 미수립**
- 그 결과 수급자의 급여를 과소·과다 지급하여 형평성이 훼손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사회보장급여 중 과소 지급된 1억 5,082만원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547만원은 환수 조치하며, 매년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요구"

#### 5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운영 부적정

- 위 군(○○○○파)은 '98. 7. 16. ○○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

위치	부지면적 (ha)	조성사업비 (백만원)	개장일	주요 시설현황
고흥군 ○○면 ○○로 0000-000	187	7,103	1998.07.16.	·숲속의 집 12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8실), 야영장 17개소, 주차장 2,000㎡, 기타 부대시설 등

##### 1.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산림휴양법」 제16조의2 등에 **휴양림 관리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파)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이용객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한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휴양림 운영**
- 그 결과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 초래 (다만 동 기간에 재난·안전사고는 미발생)

##### 2.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실시

- 산림청 「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등에 **휴양림 운영·관리자는 월별 자체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소방서 등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소속 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파)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자체점검 등 **안전점검 및 소방서 등과 모의훈련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그 결과 소속 직원의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 상실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안전교육 미실시 등 휴양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폭우·폭설 대비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⑥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00년 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산림경영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3억 567만원의 보조금으로 9건의 임도시설사업 추진

### 1. 임도 암반선(巖盤線) 확인 등 암(巖)판정 소홀

- 산림청 「임도 시공·관리 업무매뉴얼」 Ⅲ. 3. 공사 감독·관리 편 등에 **공사 감독자는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수급자, 감리자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을 실시하여 **암판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또한 산림청 「임도 시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2 암막기 편에 **암막기 작업 중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암반선을 확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00년 0월부터 '00년 0월까지 '20년 ○○ ○○○○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6건에 **암반선 노출로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도 암반선 확인 및 암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없이** 설계변경\*
    - \* (기준) 암반 지층 9,822㎡ → (변경) 17,254㎡(증 7,432㎡)
  - 그로 인하여 노출된 암반선 확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변경된 공사비의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2. 입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 「산림자원법」 제9조 등에 임도시설사업 설계 시 **노면 및 경사면에 있는 입목(뿌리 등 포함)은 전량 제거**하고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년 0월부터 '22년 0월까지 '21년 ○○ ○○○○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3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목부산물 처리비 1,8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아** 입목부산물이 **임도 사면에 폐기**되도록 방치
  - 그로 인하여 임도 사면 등에 방치된 입목부산물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취약한 결과 초래 우려

### 3. 임도 주요시설물 점검 미실시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군수는 임도 노면 등 시설물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임도를 보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매년 2회 이상 임도 노면 균열 등 시설물을 점검**(56개 노선, 160.39km) **하지 않은 채** 관련 업무 방치하여 임도의 주요 시설물이 적기에 보수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임도 암반선 확인절차 미준수, 입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임도 시설물 점검 미실시 등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임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7 불법산지전용 행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파)은 '19년 11월부터 '22년 8월까지 26건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등 행정처리
  - ※ 복구명령(관할청) → 복구설계서 제출(복구의무자) → 복구설계서 승인(관할청) → 복구준공(관할청) → 하자보증금 예치(복구의무자)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등에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신고) 없이 전용한 자에게 복구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자는 30일 이내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며, 관할청은 이를 승인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2조 등에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고, 복구의무자는 복구준공검사 이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복구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파)은 '19년 00월부터 '22년 0월까지 26건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6건은 복구명령 미조치, 15건은 복구설계서 미제출, 17건은 복구설계서 미승인, 21건은 하자보증금이 미예치인데도 준공처리
  - 그로 인하여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소홀로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
    - ※ '19년(2건) → '20년(10건) → '21년(5건) → '22년(9건)

☞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승인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불법산지전용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요구**”

### 8 ○○산 치유의 숲 명상쉼터 조성 부적정

- 위 군(○○○○파)은 '15년 12월부터 '19년 10월까지 약 280억원의 보조금으로 ○○산 치유의 숲을 조성한 이후 운영·관리

위치	부지면적 (ha)	조성사업비 (백만원)	개장일	주요 시설현황
고흥군 ○○면 ○○리 산00-0	100ha	28,000	2019.10.22.	·테라피센터 2동, 치유숲길 8.4km, 명상쉼터 5동, 기타 부대시설

-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치유의 숲에는 산림치유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은 가능하나 **숙박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
  - \* 벽과 층으로 구분되고, 취사시설·환기·욕실·화장실 등이 있는 시설
- 그런데 위 군(○○○○파)은 '15년 00월부터 '19년 00월까지 명상쉼터 5동 (826백만원)을 건축하면서 거실·안방·화장실·취사시설 등을 갖춘 **숙박 시설 형태**로 명상쉼터를 조성



- 건물 전경 -      - 내부 구조 -      - 취사시설 설치 -      - 침구 비치 -

- 그로 인하여 이용객을 위한 시설인 명상쉼터가 목적에 맞지 않는 펜션형 숙박시설로 무단 이용될 수 있는 우려 초래

☞ 치유의 숲 내 이용객을 위한 공간인 명상쉼터가 펜션형 숙박시설로 무단이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9] 일상경비 횡령 등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각 부서로부터 일상경비를 요청받아 일상경비를 배부하고 이를 각 부서에서 지출

### 1. 일상경비 점검 미 실시 및 일상경비로 구입한 물품 분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 등에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일상경비출납원 소관의 장부 등을 검사하고 회계 업무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일상경비 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

○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등에 분임물품출납원(실·과 서무담당)은 물품을 망실하면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재무과 물품 담당)에게 보고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재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 0. 0. 일상경비(174만원)로 구입한 태블릿 PC 2대 중 1대(87만원)에 대해 일자 미상에 분실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미보고한 채 방치

○ 그로 인하여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2. 일상경비 집행 대상이 아닌 물품 제조·구매 등

○ 「계약집행기준」 제1장 등에 계약담당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또는 나누어 체결하지 않고, 일상경비로 정하는 기준액(고흥군의 경우 500만원) 범위 이상은 재무과에 집행을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3개부서)은 '19년 0월부터 '21년 00월까지 단일사업 이면서 500만원 이상인 8건(7,207만원)을 집행하면서 계약담당부서(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17건으로 나눠 부당하게 분리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에 △내용연수 1년 이상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에서 집행하고, △청원경찰 복장은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3개부서)은 '19년 0월부터 '21년 00월까지 내용 연수 1년이상인 물품 8건(2,3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았고,

-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집행 17건(4,492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항목에서 지출하지 않았으며, 청원경찰 복장 3건(183만원)을 구입하면서 회계 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당하게 집행

○ 그로 인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으로 인한 지출 업무의 투명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

### 3. 일상경비 업무상 횡령

○ 「고흥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등에 공무직은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직 ○○○)은 '21년 0월 일상경비(386만원)로 PC를 구입하면서 저가 사양의 제품(248만원)을 납품받고 차액(138만원)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나머지 차액 38만원은 업체가 수수)

- 그로 인하여 일상경비 횡령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회계 업무 처리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

- ☞ 직무상 횡령을 한 공무원 1명 “고발 및 증징계요구”, 現 ○○○장, 前 팀장 1명과 前 과장 1명 총 3명 “훈계요구”
- ☞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각 부서 일상경비 점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
- ☞ 일상경비 취지에 어긋나게 물품 등을 구입 또는 지출한 해당 부서에 회계 관련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10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 부적정

□ 위 군(○○과 등 12개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자활근로사업 등 민간위탁사무 250개 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 1. 민간위탁사무 세출예산 편성목 분류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민간위탁금(307-05)**으로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7개과)는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 ○○○○사업 등 **65개 민간보조사업 351억원을 민간위탁금(307-05)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당하게 사업 추진**
- 그로 인하여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정된 수탁기관에 예산이 집행되는 결과 초래

#### 2.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미이행

-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협약 체결 후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6개과)은 '19년부터 '22년 00월까지 민간위탁 사무 **11개 사업**을 협약은 체결하였으나, **협약서 공증을 받지 않음**
- 또한 ○○○○과와 ○○과는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사업 및 ○○○ ○○○○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모집 미이행, 협약 미체결 등의 선정절차 미준수**
- 그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 초래

☞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준수하고 세출예산 편성목 분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11 ○○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5. 12. 15. ○○ ○○○○ 지정 승인 후, '21. 00. 00. 사업기간을 '24. 00. 00.까지 연장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

단지명	사업시행자	위치	개발면적	지정일	사업비	개발방식	유치업종
○○ ○○단지	㈜○○○○○○○ (대표 ○○○)	고흥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149,971㎡	'15.12.15.	175억원	민간개발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

-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변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분야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산업단지계획(변경)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21. 00. 00. 접수하고, 00일 경과 된 '22. 00. 00.에서야 사업시행자에게 **산지전용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 요청**하였고,
- 사업시행자가 '22. 00. 00.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관련 분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22. 00. 00. 전남도에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협의를, '22. 00. 00. ○○○○○ 등 **4개 기관 17개 부서**에 협의를 요청
- 결국 협의 결과 '22. 00. 00. 사업시행자의 **자금력 등 사업수행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22. 00. 00.까지 **보완요구\***한 사항이 **미제출**되었다 하여 **접수일로부터 000일이 경과한 '22. 00. 00.까지 변경 승인 여부를 미결정**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토석채취허가증, 상수도 공급계획,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그로 인하여 고흥 ○○○○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승인 여부 불투명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 우려

☞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12 물품 구매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과)은 '22년 5월부터 '22년 10월까지 ○○○ ○○○ ○○○ 구조물 등 3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약 4억 6,384만원에 체결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천원)	사업량	계약일	납기일	이행일	검사일	해당 부서
	3건	463,847						
1	2022년 고흥군 ○○○○○ ○○○○○ 구매 설치	98,738	8개소	'22.00.00.	'22.00.00.	'22.00.00.	'22.00.00.	○○과
2	고흥군 ○○(○○○) ○○○○ ○○○○ 제작 설치	346,032	30개소	'22.00.00.	'22.00.00.	'22.00.00.	미검사	
3	고흥 ○○○○(○○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19,077	15대	'22.00.00.	'22.00.00.	'22.00.00.	'22.00.00.	○○ ○○과

### 1. 물품 납품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7조 등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8조 등에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을 검사하고, 그 대가는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고흥군 ○○ ○○○○ ○○○○ 제작 설치의 경우 해당 업체의 납품완료사실을 '22. 00. 00. 통지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검사를 14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고 00일이 경과 된 '22. 00. 00. 납품검사 완료처리
  - 또한 '22. 9. 15. 고흥군 ○○ ○○○ ○○○○ 구매 검사 시 8개소 중 6개소만 설치를 완료하고, 2개소는 납기일로부터 00일이 경과 된 '22 12 1. 감사일에 설치하였는데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22 00. 00. 대가를 선지급
- 그로 인하여 ○○○○○ 미설치에 따른 24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였고, 납품 검사를 지연 처리함에 따라 346백만원을 미지급하여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초래

### 2. 정수물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등에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정수배정 승인을 받은 후 물품을 구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0. 00.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 15대를 구입하면서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구입하였고, 감사기간 중인 '22. 00. 00.에서야 승인 받음
  - 그로 인하여 물품의 적정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물품 납품 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 “훈계요구”  
 ☞ 앞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입할 경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13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

□ 위 군(○○○○과)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19년부터 '20년까지 4개 마을기업에 제조시설·기계 구입비 등으로 총 9,400만원을 지원하고 관리 중

연번	연도	마을기업명	보조사업비(천원)				지원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개 마을기업	94,000	30,000	26,000	38,000	
1	'19년	○○○○법인 (○)○○○	30,000	15,000	4,500	10,500	공장증축, ○○가공기계 등
2		○○ ○○○○법인	18,000	-	9,000	9,000	분쇄기 등, 리플릿 등
3	'20년	○○○○○○○○○법인	30,000	15,000	4,500	10,500	○○○, 포장기 등
4		○○○○○○○○○조합	16,000	-	8,000	8,000	저온저장고, 리플릿 등

#### 1. 보조금 정산 부적정

○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Ⅱ. 마을기업의 관리 편에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정산절차를 진행**하고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공장증축(2,587만원)** 등을 목적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받은 (○)○○○의 **실적보고**에 대한 **현지확인**을 '20. 00. 00. 실시하면서 **공장증축이 미완공인 것**을 알았는데도
- **공장증축 보조금 2,587만원을 환수하지 않고 9백만원만 환수하는 등 부당하게 정산 업무를 수행**

※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결과('22. 11. 24.) : 공장증축이 완료되지 않은 채 미완공 상태임

[사진] 생 략

#### 2.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 「보조금법」 제35조 등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도록 규정
- 또한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Ⅱ. 마을기업의 관리 편에 **보조금으로 구입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 등은 **중요**

재산으로 관리하고 **승인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농업회사법인 (○)○○○ 등 **4개 마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기계를 취득한 후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를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이에 대해 **방치**
-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로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감사기간 중 확인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현황 : 4개 기업 / 5,410만원

- ○○회사법인 (○)○○○ 4,951천원(○○가공기계 1대)
- ○○ ○○조합법인 18,150천원(○○추출기 3대, 포장기 2대, 분쇄기 1대, 세척기 1대)
- ○○○○○○조합법인 21,000천원(착즙기 1대)
- ○○○○○○협동조합 10,000천원(저온저장고 1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정산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前 팀장, 前 담당자 등 2명 **“훈계요구”**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에 현재액과 수량을 기록하도록 **“시정요구”**

#### 14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35조에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에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세 경감을 받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자경농민은 2년, 농업법인은 1년 이내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신고·납부 누락세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337건 6,324만원을 부과 누락하여 자주재원 확충 기회를 상실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계	본세	지방교육세
계		337	63,244	60,530	2,714
취득세	가설건축물 취득세 추징	16	12,998	12,998	
	농업회사법인 감면 취득세 추징	5	548	513	35
	자경농민 감면 취득세 추징	99	48,546	45,867	2,679
등록면허세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추징	13	234	23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록면허세 추징	204	918	918	

☞ 취득세 등 337건 6,324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15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지역개발공채를 징구 중

##### 1.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보유자에게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군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24건, 32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미이행

##### 2.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자는 허가면적 m<sup>2</sup>당 1,500원 내지 3,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지역개발공채를 미매입한 ○○○(○○면 ○○리 000, 토지) 등 형질변경허가 21건, 2억 3,775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누락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4건 324만원과 지역개발공채 21건, 2억 3,775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16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에 따라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고 있음
-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에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은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훈령 제63조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은 '00. 00. 00. 예치한 계약보증금 1,648만원 등 **40건 1억 3,410만원**을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22. 12. 1. 감사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방치**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 중인 계약보증금 등 1억 3,410만원을 세입조치 하도록 "시정요구"

### 17 해양수산사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 '18년부터 '22년까지 ○○○ ○○○○○사업 등 314개 사업, 1,159억원을 지원·관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등에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 등 2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액\* 11억 4,150만원**을 미반납
- \* 집행잔액 11억 2,825만원(국비 10억 2,904, 도비 9,921), 이자액 1,325만원(국비 943, 도비 382)
- 그로 인하여 세입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비 잔액(10억 2,904만원) 및 이자액(943만원)은 해수부에 반납하고, 도비 잔액(9,921만원) 및 이자액(382만원)은 전남도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 18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부터 '22년까지 수산업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 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추진

### 1.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 「수산업법」 제71조 등에 행정관청은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11조에 행정청은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0월부터 '21년 00월까지 어구 실명제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1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하였으나, ○○○○ ○○○○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은 미요구
  - 그로 인하여 해기사 면허정지 등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초래

### 2. 관리선 행정처분 부적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등에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에 관리선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1차 위반한 경우 양식업면허는 경고하고, 관리선은 30일 정지처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0. 00. 관리선 사용 위반으로 1차 적발된 관리선 ○○호 등 2척에 대하여 양식업면허만 경고 처분하고, 30일 정지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

☞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를 하지 않은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관리선 사용 위반 어선 2척에 대하여 30일 정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시정요구”

## 19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 위 군(○○읍 등 12개 읍면)은 '19년부터 '22년까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면 현장확인 등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취증 발급 시 법인 등기 사항에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면 등 5개 면)은 '21년부터 '22년까지 농취증을 발급 받은 5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17필지, 26,235㎡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2 12 1. 감사일까지 해당 법인의 등기를 미확인
  - 그로 인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 초래
- 「농지법」 제7조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면적으로 규정
  - 그런데 위 군(○○읍 등 10개 읍·면)은 농취증 발급 당시 세대원 합산 면적을 확인하지 않아 ○○도 ○○시 등에 거주하는 21세대에 농지 소유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데도 44필지, 38,032㎡ 발급
  - 그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가 과다 취득하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을 저하 초래

☞ 관련 부서에 목적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 하도록 하고, 휴경으로 인해 농지 이용을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시정요구”

20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단위 : 점)

□ 위 군(○○○○과, ○○○과)은 고흥군 ○○ ○○○ ○○○○○ ○○ 및 ○ ○○○ ○○ 용역 등 2건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

1. 입찰공고와 다른 심사기준 적용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 0. 00.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안서의 정량적 지표 심사기준대로 평가를 실시해야하는데도
- 입찰공고 상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지표(5점)를 임의로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지표(6점)로 변경하는 등 정량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단위 : 점)

구분	고흥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	(○)○○○○	(○)○○	(○)○○○○
계	79.52 (1순위)	78.28 (2순위)	76.52 (2순위)	77.78 (1순위)
정량평가	12.5	13.5	9.5	12
정성평가	54.8	50.4	54.8	50.4
가격평가	12.22	14.38	12.22	14.38

-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인 (○)○○○○가 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2. 증빙자료 없는 평가자료 인정

- 같은 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서류가 미첨부되었으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미제출하면 당초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면 제외하고 평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00. 00. 00. (○)○○○○의 정량적 평가자료 중 참여연구진 0명의 10년 이상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보완서류를 미요구한 채 부적정하게 경력으로 인정

구분	고흥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	○○○○○○○○○○	(○)○○○○	○○○○○○○○○○
계	86.68 (1순위)	86.2 (2순위)	85.68 (2순위)	86.2 (1순위)
정량평가	18	19	17	19
정성평가	59.8	57.2	59.8	57.2
가격평가	8.88	10	8.88	10

-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인 ○○○○ ○○○○○이 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 입찰공고와 다른 심사기준으로 변경 적용하여 정량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를 정확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1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지연 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

(단위 : 천원)

구분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 상대자	계약기간 (준공검사일)	지연배상금 부과일 (지연일)	고용군 수의계약 배제 기간 (실제 통보일)	정당 통보일 (소급적용기간)
지연 배상금	2021 ○○ ○○지구 ○○○○ 개설사업	79,700	(주)○○○○	'21.00.00.~'22.00.00. ('22.00.00.)	'22.00.00. (00일)	'22.00.00.~'22.00.00. ('22.00.00.)	'22.00.00. (00일)
	○○면 ○○마을 ○○○○ 시설 개선공사	38,478	○○○○(주)	'21.00.00.~'21.00.00. ('21.00.00.)	'21.00.00. (00일)	'21.00.00.~'22.00.00. ('21.00.00.)	'21.00.00. (00일)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467,430	○○○○○○○○	'21.00.00.~'22.00.00. ('22.00.00.)	'22.00.00. (00일)	'22.00.00.~'22.00.00. ('22.00.00.)	'22.00.00. (00일)
수의계약	○○○○ ○○○○ ○○○○(○○)○○○○ ○○○○공사	14,100	(주)○○○○	'22.00.00.~'22.00.00.	-	-	

○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계약 이행을 10일 이상 지연한 '2021 ○○ ○○지구 ○○○○사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관내 부서에 수의계약 배제 통보를 지연하여 수의계약 배제 기간이 적게는 10일에서 길게는 30일이 축소됨

\* (주)○○○○○, ○○○○(주), ○○○ ○○○○

- 그로 인하여 (주)○○○○○은 '22. 0. 00.부터 0. 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는데도 수의계약 배제 통보를 '22. 0. 0.함으로써 '○○○○ ○○○○ ○○○○(○○)○○ ○○○ ○○○공사'를 '22. 0. 0. 수의계약(14백만원) 하는 결과를 초래

앞으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시 해당 업체와 3개월 이내 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2. 1. 27.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총괄·관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부적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 00. ○○○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은 하였으나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은 마련하였으나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안전관리자는 '22년 0월에, 보건관리자는 '22년 0월에 선임하였으나, 산업보건의는 '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미배치

○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 미부여 및 산업보건의 미배치로 중대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

**2.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미 마련 및 이행점검 등 부적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 0. 종사자 의견 청취를 위해 게시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종사자 의견을 듣지 못하여 개선방안 미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 미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5.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

하였으나 정기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음

### 3.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 대책 기준 미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중대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대응조치와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고, '22. 0. 0. 상황별 응급 조치 및 비상 대비 시나리오만 8가지 마련하여, 매뉴얼에 따라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못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과 건설업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은 '22. 12. 1. 감사일 현재 도급, 용역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과 건설업 공사 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못하고 있음**
-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 등을 초래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기준과 건설업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 23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은 '22. 12. 1. 감사일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를 관리
- 「도로법」 제61조 등에 **도로를 점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은 '22. 12. 1. 감사일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를 설치하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
- 「도로법」 제103조 등에 도로구역 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에는 **건당 도로점용 허가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7,649건의 지정 게시대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764만원을 미부과**
- 「옥외광고물법」 제3조 등에 광고물 표시 기간 연장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미리 알려 **연장 신청**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은 '22. 12. 1. 감사일 현재 표시 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알리지 않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사용** 중인 6건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미조치**

☞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신청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도로구역 내 지정게시대 **현수막 게시 시에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주의요구”**

## 24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00년 ○○○○사업(○ ○ ○○지구) 등 14건의 사방사업을 추진
  - 「사방사업법」 제3조 등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준공 후 4년이 지난 시설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131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보완·보수대상 26개소 중 12개소에 대하여 응급조치 등 미실시
    - 그로 인하여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보고서를 활용·이행하지 못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
  - 「지방계약법」 제20조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12. 1. 감사일까지 하자검사대상 총 131건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시 적기에 보수할 수 있는 기회 상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역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12. 1. 감사일까지 '0000 ○○○ ○○사업(○ ○ ○○○지구)' 등 2건에서 강관 비계 미시공 등으로 495만원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매년 사방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보완·보수대상 12개소에 대하여 응급조치 등을 미실시하며, 하자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은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응급조치 등을 시행하고, 과다 계상된 495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25 건축 설계용역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단 등 5개 부서)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총 30건의 건축 설계용역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추진
  1. 계약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적절성·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단 등 4개 부서)은 건축 설계용역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심사 등을 수행하면서 총 7건, 5,025만원\*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
        - \* 증액 50,217천원, 감액 32천원
    - 그로 인하여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
  2. 계약서에 산출내역서 첨부 소홀
    - 「지방계약법」 제14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13건의 계약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 체결
    - 그로 인하여 계약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초 산출내역서 부재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못하여 계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를 초래

☞ 계약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現 담당 팀장 2명 "훈계요구"

☞ 앞으로 건축 설계용역 계약 시 산출내역서 첨부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 3개 부서)은 '00년 00월부터 '22년 10월까지 ○○○○ ○○○○ 건립 ○○용역 등 5건의 공공건축물 조성 설계용역을 추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등에 설계용역 발주 전 **용역비 규모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하도록 규정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 (우선 적용)

- 그런데 위 군(○○○○과 등 3개 부서)은 '00년 00월부터 '22년 10월까지 설계용역 5건을 발주하면서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의뢰**하였고,
- 특히 ○○○○ ○○○○ 건립 실시설계 용역은 추정가격 산정 시 임의로 **난이도 80%**를 적용하여 **9,944만원**으로 산정한 후 **설계공모 등 모든 행정절차 미이행**
- 그로 인하여 공공건축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공공건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업무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용역(1건) 前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7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 16개 부서)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549건을 추진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정문화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과)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한 0000 ○○ ○○마을 ○○○ ○○ ○○ 공사 외 1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
- \* 관련 문화재 : 도 기념물(○○○○○○○, ○○○○○○)
-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1명, 現 담당 팀장 1명 총 2명 **“훈계요구”**

## 28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230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검·관리하고, 41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 「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에 군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의 정기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정비사업 중 3건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업 시행, 11건은 도지사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고, 230개소에 대한 분기별 정기점검은 총 2,522회 중 2,175회만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역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 ○○시설 개보수사업(○○ ○○○)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토공 다짐 미실시 등으로 5,292만원 감액(회수)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낭비 우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등에 따른 시·도지사 인가 절차 미이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기점검을 일부 하지 않은 前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5,292만원을 감액(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29 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00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회신하는 등 이행실태 업무를 추진

### 1. 재해영향평가등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협의권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
  - ※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에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 또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협의권자에게 지정·통보하고, 착공·준공하려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9개 부서)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공사를 시작한 00건 전부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을 하지 않음
    - \* 관리책임자 미지정·통보 00개소, 착공 미통보 00개소, 준공 미통보 00개소
  - 그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2. 재해영향평가등의 이행실태 업무 처리 부적정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4항에 사업시행자는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비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6조의4에 협의권자는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공사를 시작한 00건의 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를 단 1회도 시행하지 않아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통보 등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못함

- 그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이행실태 미점검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해영향평가등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前 업무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재해영향평가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 30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노면표시가 포함된 ○○군도00호선(○○○○~○○) ○○○공사 등 51건의 공사를 추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는 노면표시 기준\*에 맞게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 확인 후 준공하도록 규정
    - \* (백·황색) 240·150mcd/(m<sup>2</sup>·lx) 이상 \*\* (노면표시 반사성능) 광원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양
  - 그런데 위 군(○○과)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노면표시가 포함된 **24건의 공사에 대해 휘도 검사 없이 준공금(12억 300만원)을 지급**
  - 그로 인하여 24건의 공사는 야간 및 우천 차량 운행 시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교통상의 안전장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

☞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노면표시 기준에 맞게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 확인 후 준공 처리 하도록 “**주의요구**”

### 31 야영장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야영장 0개소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후 관리·감독을 추진
  - 「관광진흥법」 제4조 등에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
  -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에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 검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19년 0월부터 '22년 00월까지 영업 중인 야영장 0개소의 반기별 점검 결과를 1회도 제출받지 않고, 야영장 0개소는 사업자와 안전요원 모두 안전교육 미이수
- 또한 지하수를 급수시설로 사용하는 0개소 야영장 중 0개소가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야영장 관리업무를 태만
- 그로 인하여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등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야영장 안전점검 미확인 및 안전교육 이수 일부 미확인과 수질검사 일부 미실시 등의 야영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現 업무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32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 등 미이행

- 위 군(○○○○○○소)은 '20년 2월부터 '22년 7월까지 ○○ ○○ ○○○○ 개발사업 등 4건의 도서식수원 및 상수도 급수공사 추진

#### 1.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 미이행

- 「수도법」 제17조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00. 00. 00. ○○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시 시·도지사 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
  - 그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 발생

#### 2. 일반수도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0년 0월부터 '22년 0월까지 추진한 ○○ (○○, ○○, ○○) 상수도 급수공사 등 3건에서 되메우기 및 다짐 시램머 미사용 등으로 1,311만원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시·도지사 인가를 이행하고, 과다 계상된 1,311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3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유지관리·설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소)은 '18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읍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하수도 업무 추진

#### 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 「하수도법」 제20조에 군수는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2. 12. 1. 감사일 현재 5년이 경과된 하수관로 430.5km 중 279.6km(64.98%)의 기술진단 미실시 및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미점검

- 그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 상실

#### 2.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어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2. 12. 1. 감사일 현재 ○○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에서 토질조사 미실시 등으로 2,250만원 감액·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과다 계상된 2,250만원을 감액·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34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이행

□ 위 군(○○○○○○소, ○○과)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추진

####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이행

○ 「지하수법」 제7조 등에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유효기간(5년) 만료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최근 6개월 내의 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하수는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지하수 유효기간이 만료된 총 16개소 중 4개소만 원상복구 조치하고, 12개소에 변경절차 안내 및 원상복구 절차 미이행

#### 2. '19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공공감사법」 제23조 등에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한편 '19년 종합감사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이행' 건으로 관련자에게 '훈계요구' 및 28개소의 행정처분 '시정요구'를 조치를 받음

- 그런데 위 군(○○○○○○소)은 '19년 9월부터 '22년 10월까지 28개소 지적사항 중 9개소만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과 소유 17개소와 개인 소유 2개소 변경절차 및 원상복구 절차 미조치

- 또한 ○○과는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하수 17개소 중 6개소는 최근 6개월 내의 영향평가서 분실로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11개소는 수중 모터 미작동, 시설물 부존재 등의 사유로 미이행

○ 그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19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前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 3. 적극행정 면책

#### ① 하수도 설치사업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 1. 지적사항

- 위 군(○○○○○○소)은 '18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 ○○읍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 「하수도법」 제11조에 시장·군수는 시설용량의 10분의 1 이상 증·감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00. 00. 00. ○○읍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처리용량이 10%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시·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
- \* (시산) 65㎡/일 → 100㎡/일(증 35, 53.8%), (지죽) 60㎡/일 → 110㎡/일(증 50, 83.3%)
- 그로 인하여 국비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 발생

#####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양오염 방지 및 김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한 것으로 공익 증진 인정
- (적극행정)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양오염 방지 및 김 양식장 피해 예방이 시급하여 추진한 것으로 적극행정 인정
- (고의·중과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업 시공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환경부로부터 상위 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 또한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4. 모범사례

### 1 귀농어·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상담부터 정착,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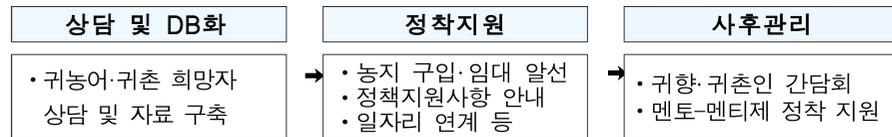
- 귀농어·귀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지역 정착의 어려움 해소 필요
-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귀농어·귀촌인 유치 수요 증대  
 ※ '17) 66.7천명 → '18) 65.7천명 → '19) 64.9천명 → '20) 63.9천명 → '21) 62.7천명

####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년 7월 ~ '22년
- 투입예산 : 841백만원(국200, 도50, 군591) / 22년 예산  
 일반운영비 30%, 일반보전금 30% 민간이전 35% 연구용역비 5%

#### ○ 추진내용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8종), 귀농어·귀촌 기술·정보 제공(3종)
- 상담DB 구축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정착 사례집 발간
- 맞춤형 정보 원스톱 T/F팀 구성(8개 부서, 17명), 상담 전담요원 채용(3명)



#### □ 추진실적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흥군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 '19년 1월 ~ 7월
- 맞춤형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 '19년 11월  
 - 3개 프로세서 구축(상담·DB화, 정착지원, 사후관리)

#### ○ 맞춤형 서비스 운영(3개 프로세서)

프로세서	지원대상	실행방법	추진실적
상담 및 DB화	희망자	· 상담 DB 구축	· 귀농귀촌행복학교 지원센터 운영
		·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 진행	· 8,354건(방문 등 프로그램 활용)
		· 전담 홈페이지 개설·운영	· 19년부터 개설 운영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4종)	· 612명 참여(예비 희망자)
		· 농촌에서 살아보기(1개소)	· 3기 14명 참여(10명 전입)
정착지원	희망자	· 귀농어귀촌 도우미 운영	· 16명(16개읍면)
		· 선도 농가·귀농 연수생 매칭교육	· 매년 100여 명
		· 정착 수기집 발간	· 2회 발간(정착자 대상)
		· 귀농어귀촌 교육(귀농귀촌행복학교)	· 5회 추진(134명)
사후관리	정착자	· 귀농어귀촌인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	· 3회 추진(참여귀농인 20명)
		· 마을단위 융화교육	· 4회(200명 참여)
		· 우수 귀농어인 창업 활성화 지원	· 9명(전남창조혁신센터 교육)



#### □ 추진성과

- '19년 7월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인 **5,243명 유치(고흥군 인구의 84%)**
  - 지역재생잠재력지수 전국 4위('20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지수 내 수록)
  - '21년 귀농·귀촌 인구 유입 전남 1위('21년 6월 통계청·농식품부 등 공동발표)
- 이용자 위주 프로그램 구축으로 **실제 정착율 73.6% 달성**
  - 귀농어·귀촌인 5만 3천명 중 3만 9천명 프로그램 이용
- 차별화된 귀농·귀촌 지원 모델제시로 **농식품부 등 성과평가 최우수상 수상**
  - 농식품부 귀농 성과평가 수상('19년 최우수상, '21년 장려상), 도 종합평가 대상 수상

## 5. 처분요구서

### 목 차

①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의 부당 사용(시정, 통보) .....	57
②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징계, 훈계, 시정, 주의) .....	62
③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등 형식적 운영(주의) .....	87
④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91
⑤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운영 부적정(훈계, 주의) .....	103
⑥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107
⑦ 불법산지전용 행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112
⑧ ○○산 ○○의 ○ ○○○○ 조성 부적정(통보) .....	116
⑨ 일상경비 횡령 등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고발, 징계, 훈계, 시정, 주의) .....	118
⑩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	133
⑪ ○○ ○○○○ ○○단지계획 변경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140
⑫ 물품 구매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143
⑬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	147
⑭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154
⑮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시정) .....	172
⑯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시정) .....	178

⑰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182
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187
⑲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시정) .....	191
⑳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198
㉑ 수의계약 등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205
㉒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	208
㉓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시정, 주의) .....	215
㉔ 사방시설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225
㉕ 건축 설계용역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233
㉖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239
㉗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	242
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245
㉙ 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	252
㉚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258
㉛ 야영장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265
㉜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 등 미이행(시정) .....	269
㉝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유지관리·설치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273
㉞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이행(훈계, 시정) .....	278

# 전라남도

## 시정요구·통보

제 목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부당 사용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총 1,516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 등<sup>1)</sup>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고흥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검진<sup>2)</sup>을 받기 위해 사전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2022년도 단체협약서」 제46조 등<sup>3)</sup>에 따르면 고흥군은 근로기준법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

3) 고흥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군에서 고용한 노동자 조합) 체결한 단체협약서 및 고흥군 ○○과-0000(2000.0.00.)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소속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허가를 득한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 등 13개부서)은 2019년 0월부터 2022년 00월까지 ○○○과에 근무하는 ○○○급 ○○○ 등 93명이 112회에 걸쳐 [별표] “공가 부당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명세”와 같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했는데도 공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특히 ○○○ 지방○○○○○ ○○○ 등 19명은 2회 이상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도 공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부적절한 공가 사용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12,443,802원이 9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소속공무원 등이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 했음에도 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12,443,802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검진 관련 공가 사용에 대한 직원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전라남도

## 징계·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

징계 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 ○○○(1900. 0. 0.)

징계의 종류 경징계

훈계 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 ○○○(1900. 0. 0.)  
(前 ○○과)

② 고흥군 ○○○○○과 지방○○○○○ ○○○(1900. 0. 0.)  
(前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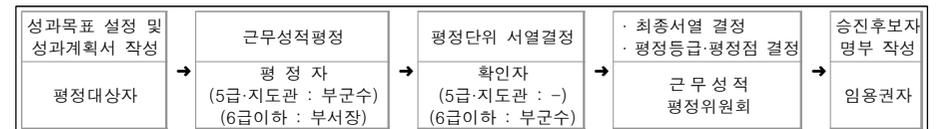
③ 고흥군 ○○과 지방○○○○○ ○○○(1900. 0. 0.)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년 상·하반기(4월·10월)로 나눠 [표 1]과 같이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21명과 공무원직 4명에 대한 징계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근무성적평정 절차



자료 : 고흥군 근무성적평정계획 재구성

[별표] 생략

지방○○주사보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공무직 징계업무 담당자로,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징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평정단위별 서열순위에 어긋난 전체 평정서열 결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영 제31조의4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평정단위별 순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

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2019년 하반기 지방○○0급 평정단위별 서열순위가 11번인 ○○○과 12번인 ○○○에 대하여 전체 지방○○0급 평정서열을 결정하면서 ○○○은 15번, ○○○은 11번을 부여하는 등 [표 2]와 같이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11명,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4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평정단위별 제출된 서열순위에 어긋난 전체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부여하였다.

[표 2] 평정단위별 서열순위에 어긋난 전체 근무성적평정 현황

연번	평정 시기	평정 단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부당사항		
			직렬	성명	정당한 근무성적평정		부여된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점 (가=A-B)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0급(1년 이내) : 가×(34%/2)] [0급(2~3년 이내) : 가×(33%/2)]	
					평정단위별 서열순위	평정점 (A)	전체 서열순위	평정점 (B)			
1	2019년 하반기	○○ 직렬 0급	○○ 0급	○○○	11	56.1	15	47.8	△ 8.3점	1년 이내 : △ 1.41 2~3년이내 : △ 1.37	
2				○○○	12	54.8	11	56.1	증 1.3점	1년 이내 : 증 0.22 2~3년이내 : 증 0.21	
3				○○○	13	52.8	12	54.8	증 2.0점	1년 이내 : 증 0.34 2~3년이내 : 증 0.33	
4				○○○	15	47.8	13	52.8	증 5.0점	1년 이내 : 증 0.85 2~3년이내 : 증 0.83	
5				○○○	16	45.3	18	40.3	△ 5.0점	1년 이내 : △ 0.85 2~3년이내 : △ 0.83	
6				○○○	18	40.3	16	45.3	증 5.0점	1년 이내 : 증 0.85 2~3년이내 : 증 0.83	
7	2019년 하반기	○○ 직렬 0급	○○○ 0급	○○○○ 0급	○○○	3	67.2	4	63.9	△ 3.3점	1년 이내 : △ 0.56 2~3년이내 : △ 0.54
8				○○ 0급	○○○	4	63.9	3	67.2	증 3.3점	1년 이내 : 증 0.56 2~3년이내 : 증 0.54
9				○○○○ 0급	○○○	5	62.6	6	61.3	△ 1.3점	1년 이내 : △ 0.22 2~3년이내 : △ 0.21
10				○○ 0급	○○○	6	61.3	7	60.0	△ 1.3점	1년 이내 : △ 0.22 2~3년이내 : △ 0.21
11				○○ 0급	○○○	7	60.0	5	62.6	증 2.6점	1년 이내 : 증 0.44 2~3년이내 : 증 0.43
12	2022년 상반기	○○면 ○○과	○○ 0급	○○○	2		64	48.9			
13				○○○	3		51	52.8			
14				○○○	4		16	45.3			
15				○○○	5		15	47.8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비록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무성적평정상의 선순위와 후순위가 바뀌어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3.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 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되,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 제5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수”(20%), “우”(40%), “양”(30%), “가”(10%)의 분포비율별 평정대상 공무원의 서열순위와 그 서열순위에 따라 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을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 중(2022. 11. 23.~12. 1.) 고흥군(○○과)에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실시한 총 6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별표]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명세”와 같이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총 대상자 748명 중 78명(10.4%),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총 대상자 766명 중 56명(7.3%),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총 대상자 752명 중 19명(2.5%),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총 대상자 784명 중 167명(21.3%)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과 다르게 부여된 사항이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고흥군(○○과)은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등급이 ‘수’(대상인원의 2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6명이면 앞순위부터 7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5명에게 0.8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0점 초과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25점이 초과 반영되는 등 [표 3]과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48명 중 78명(10.4%)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3] 2019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직급	인원	내용
2019년 하반기	748명		78명	
	○○ 0급	5명		‘수’등급이 6명이면 1.0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5명에게 0.8점 간격 부여 →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0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25점 초과반영
		12명		‘양’등급이 13명이면 1.5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2명에게 1.0점 간격 부여 → 12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5점에서 최대 6.0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3점에서 최대 1.50점 초과반영
	○○ 0급	1명		대상자가 16명이면 ‘우’등급이 7명인데 6명에게만 ‘우’등급을 부여하고, 1명은 ‘양’등급 점수부여 → 1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3.3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82점 초과반영
		6명		‘양’등급 1명 부당증가에 따른 ‘양’등급 6명에게 연차적 점수 오류 → 6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각 2.5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각 0.63점 초과반영
	○○ 0급	1명		대상자가 67명이면 ‘수’등급이 13명인데 1명을 초과하여 14명을 ‘수’등급 점수부여 → 1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0.9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23점 초과반영
		53명		‘수’등급 1명 부당증가에 따른 ‘우’등급 및 ‘양’등급 56명에게 연차적 점수 오류 → 53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4점에서 최대 0.7점 초과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0점에서 최대 0.18점 초과반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 2)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고흥군(○○과)은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

등급이 '우'(대상인원의 4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10명이면 앞순위부터 63.9점에서 1.1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9명에게 0.9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 반영되는 등 [표 4]와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66명 중 56명(7.3%)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4]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내용
		직급	인원	
2020년 상반기	766명		56명	
		○○ 0급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반영
		○○ 0급	12명	'양'등급이 13명이면 1.5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2명에게 1.0점 간격 부여 → 12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5점에서 최대 6.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3점에서 최대 1.50점 과다반영
		○○ 0급	1명	대상자가 63명이면 '수'등급이 13명인데 12명만 '수'등급, 1명은 '우'등급 점수 부여 → 1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1.3점 과소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65점 과소반영
			25명	'우'등급 1명 부당증가에 따른 '우'등급 25명에게 연차적 점수 오류 → 2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각 0.4점 과소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각 0.20점 과소반영
	○○ ○○○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45점 과다반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 3)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고흥군(○○과)은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 등급이 '양'(대상인원의 4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20명이면 앞순위부터 52.8점에서 1.0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19명에게 0.7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1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3점에서 최대 5.7점 과다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5점에서 최대 2.85점 과다 반영되는 등 [표 5]와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52명 중 19명(2.5%)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5]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내용
		직급	인원	
2021년 하반기	752명		19명	
		○○ 0급	19명	'양'등급이 20명이면 1.0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9명에게 0.7점 간격 부여 → 1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3점에서 최대 5.7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5점에서 최대 2.85점 과다반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 4)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고흥군(○○과)은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 등급이 '우'(대상인원의 4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10명이면 앞순위부터 63.9점에서 1.1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9명에게 0.9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 반영되는 등 [표 6]과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84명 중 167명(21.3%)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6] 202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내용
		직급	인원	
2022년 상반기	784명		167명	
		○○ 0급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반영
		○○ 0급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45점 과다반영
		○○ 0급	5명	'수'등급이 6명이면 1.0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5명에게 0.8점 간격 부여 →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25점 과다반영
			12명	'양'등급이 13명이면 1.5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2명에게 1.0점 간격 부여 → 12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5점에서 최대 6.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3점에서 최대 1.50점 과다반영
		○○ 0급	1명	대상자가 80명이면 '수'등급이 16명인데 1명을 초과하여 17명을 '수'등급 점수부여 → 1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1.3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33점 과다반영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직급	인원
			63명
	○○ 0급		2명
	○○ 0급		57명
	○○ ○○○		9명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정당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부여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공무원 및 공무원직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으면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한편 「고흥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사용부서의 담당은 징계의결요구서 및 관련 자료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에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징계 등의 양정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자치부령, 2015. 11. 19. 제정·시행)으로 마련하였기에 행정자치부의 통일적 기준에 따르고자 2016. 12. 23.자로 폐지<sup>1)</sup>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직 근로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으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단)은 2000. 00. 00. ○○○○○○○○○○○○○○○○○으로부터 지방○○0급 ○○○의 ○○○○ 관련 ○○○○○○ 결정 통보를 받았으면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징계를 요구하지 않다가 2000. 00. 00.에서야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한 ○○과는 2000. 00. 00. ○○○○○○○○○○○○○○○○○으로부터 지방○○0급 ○○○의 ○○○○ 관련 ○○○○○○ 결정 통보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받았으면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는 2000. 00. 00. ○○○○○○○○○○○○○○○○○으로부터 ○○○ ○○○

1) 2016. 12. 23.자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이유

의 ○○○○ 관련 ○○○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으면 사용부서의 장(당시 ○○○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부서의 장(현 ○○○○○장)에게 ○○○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비위행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결 대상자가 승진 및 급여 등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 5.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지방○○○○○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공무원직 정계업무 담당자로,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및 공무원 정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가. 2000년 ○반기 및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부당 처리

○○○은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등급이 ‘양’(대상인원의 4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20명이면 앞순위부터 52.8점에서 1.0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19명에게 0.7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1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3점에서 최대 5.7점 과다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5점에서 최대 2.85점 과다 반영되는 등 [표 7]과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52명 중 19명(2.5%)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7] 200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내용
		직급	인원	
2000년 ○반기	752명		19명	
		○○ 0급	19명	‘양’등급이 20명이면 1.0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9명에게 0.7점 간격 부여 → 1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3점에서 최대 5.7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5점에서 최대 2.85점 과다반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또한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 0급에 대하여 평정등급이 ‘우’(대

상인원의 40%)이면서 평정대상 인원이 10명이면 앞순위부터 63.9점에서 1.1점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9명에게 0.9점 간격으로 부당하게 부여하여,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 부여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 반영되는 등 [표 8]과 같이 평정대상 총 인원 784명 중 167명(21.3%)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였다.

[표 8]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부여 현황

근평 시기	평정대상 총 인원	근무성적평정점 부당 입력 내역		내용
		직급	인원	
2000년 ○반기	784명		167명	
		○○ 0급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3점에서 최대 0.31점 과다반영
		○○ 0급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45점 과다반영
		○○ 0급	5명	‘수’등급이 6명이면 1.0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5명에게 0.8점 간격 부여 →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25점 과다반영
			12명	‘양’등급이 13명이면 1.5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12명에게 1.0점 간격 부여 → 12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5점에서 최대 6.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13점에서 최대 1.50점 과다반영
		○○ 0급	1명	대상자가 80명이면 ‘수’등급이 16명인데 1명을 초과하여 17명을 ‘수’등급 점수부여 → 1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1.3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33점 과다반영
			63명	‘수’등급 1명 부당증가에 따른 ‘우’등급 및 ‘양’등급 63명에게 연차적 점수 오류 → 63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3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7점에서 최대 0.45점 과다반영
		○○ 0급	2명	대상자가 76명이면 ‘수’등급이 15명인데 2명을 초과하여 17명을 ‘수’등급 점수부여 → 2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1.6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0.80점 과다반영
	57명		‘수’등급 2명 부당증가에 따른 ‘우’등급 및 ‘양’등급 57명에게 연차적 점수 오류 → 57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6점에서 최대 7.0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30점에서 최대 3.50점 과다반영	
	○○ 000	9명	‘우’등급이 10명이면 1.1점 간격으로 부여해야하나, 9명에게 0.9점 간격 부여 → 9명에게 근무성적평정점이 최소 0.2점에서 최대 1.8점 과다부여로 승진후보자명부에 최소 0.05점에서 최대 0.45점 과다반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및 차세대인사량 축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정당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부여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나.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은 2000. 00. 00. ○○○○으로부터 지방○○○급 ○○○의 ○○○○ 관련 ○○○○○○ 결정 통보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받았으면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2000. 00. 00. ○○○○○○○○으로부터 ○○○ ○○○의 ○○○○ 관련 ○○○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으면 사용부서의 장(당시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 군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부서의 장(현 ○○○○○○장)에게 ○○○ 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결 대상자가 승진 및 급여 등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징계요구 양정

2000년 ○반기 및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이행한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2000년 ○반기 및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등급별 분포비율에 걸맞는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의 당사자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미이행한 지방○○○○○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하고(**징계**)
- ② 근무성적평정과 징계업무를 총괄 및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서 부당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지방○○○ ○○○, 지방○○○○○ ○○○ 및 2000년 ○반기와 2000년 ○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며(**훈계**)
- ③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의 당사자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미이행 중인 2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시정**)
- ④ 앞으로 평정단위별 서열순위를 준수하면서 전체 평정서열을 결정하고, 등급별 분포비율에 걸맞는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며, 통보 받은 범죄사건에 대해 법령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및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등 형식적 운영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징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 2. 인사위원회 회의록 부실 작성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7~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회의 일반승진임용 심의·의결을 위한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인사위원들의 직급별 승진대상자에 대한 논의 사항 등을 회의록에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표]와 같이 ‘위원 간 상호 자유의견 개선’이라고만 기재한 후 결정사항에 대해서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표] 고흥군 인사위원회 개최시기 별 부당 회의록 작성 현황(2019년 12월~2021년 12월)

(단위 : 명)

연번	인사위원회 개최일	회의록 기재사항	회의록 미기재 사항
계	6회		
1	2019. 00. 00.	○○과장 검토안 설명 및 위원 간 상호자유 의견 개선	일반승진임용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 발언 요지 미기재
2	2020. 00. 00.		
3	2020. 00. 00.		
4	2021. 00. 00.		
5	2021. 00. 00.	위원 간 상호자유 의견 개선	
6	2021. 00. 00.	위원 간 상호자유 의견 개선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어떤 논의와 심의를 거쳐 승진대상자가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를 하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등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자료, 주요 업무성과, 업무역량 등 승진후보자별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 관련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대상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능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전심의하여 승진대상자를 확정하면 임용권자에게 인사위원회가 확정된 승진대상자를 보고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진임용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7회의 일반승진임용 심의·의결을 위한 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승진심사를 해야하는데도 ○○과장이 승진대상자를 우선 언급

하면 추천된 자보다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 자는 논의하지 않은 채 추천된 자만 인사위원 간 논의 후 승진자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인사위원회를 부당하게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이면서도 추천 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기회 없이 탈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순으로 승진심사를 하는 등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만 65세 이하 중 소득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2. 사망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장제급여 편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구당 800천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가구원 또는 장제조치를 실시하는 사람이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가 2000. 00. 00.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책임진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장제급여<sup>1)</sup> 750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1] 및 [별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명세”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실제 장례를 책임진 총 178명에게 141,8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명, 원)

연도	인원	미지급금액	미지급사유
계	178	141,800,000	
2019년(9~12월)	12	9,000,000	미신청
2020년	43	34,400,000	
2021년	48	38,400,000	
2022년(1~10월)	75	60,000,000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신규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차상위특례자 과소 지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기준액 이하로 연금 지급이 결정된 수급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만65세 이상 차상위급여특례자는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편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도입 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면서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가급

1) 장제급여 변동 : 2019년까지 750,000원, 2020년부터 800,000원 지급

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20조와 「국가재정법」 제96에 따르면 미지급된 급여의 소급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장애연금 수급자 중 만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2019. 00. 00.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2019년 00월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0개월분을 누락한 채 2020년 0월부터 지급하는 등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2]와 같이 총 7명에게 장애수당을 320,000원 과소 지급하였다.

또한 장애연금 도입 이후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인 ○○○에 대하여 만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인 2015년 11월부터는 차상위특례부가급여인 140,000원<sup>2)</sup>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70,000원씩 과소 지급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2명에게 장애연금 차상위특례 부가급여 8,40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장애수당·장애연금차상위특례부가급여 과소 지급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구분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최초 신청일 (변동확정일)	실제 지급		정당 지급 금액(b)	과소지급 (c-b-a)	비고
					최초(변동) 지급일	금액(a)			
계		9명	9명					8,720,000	
		소계	7명					320,000	
장애수당	1	○○○	1900.00.00.	2019.00.00.	2020.00.00.	40,000	120,000	80,000	
	2	○○○	1900.00.00.	2019.00.00.	2020.00.00.	40,000	80,000	40,000	
	3	○○○	1900.00.00.	2020.00.00.	2020.00.00.	40,000	80,000	40,000	
	4	○○○	1900.00.00.	2020.00.00.	2020.00.00.	40,000	80,000	40,000	
	5	○○○	1900.00.00.	2021.00.00.	2021.00.00.	40,000	80,000	40,000	3월등급판정
	6	○○○	1900.00.00.	2021.00.00.	2021.00.00.	40,000	80,000	40,000	
	7	○○○	1900.00.00.	2021.00.00.	2021.00.00.	40,000	80,000	40,000	

(단위 : 원)

2) 장애연금 차상위특례 부가급여 변동 : 2012년까지 120,000원, 2013년부터 140,000원 지급

장애연금 (차상위 특례부가 급여)	1	○○○	1900.00.00.	2009.00.00.	2015.00.00. 2022.00.00.	월 70,000	월 140,000	4,200,000	각 60개월 <sup>3)</sup>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사망자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 과다 지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16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환수 편 및 「장애인복지법」 제51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환수 편에 따르면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 상실된 이후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초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된 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0. 0. 00. 사망한 ○○○에게 2021년 0월까지 4개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표 3] 와 같이 총 18명에게 5,479,500원을 과다 지급하고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3] 사망자 기초연금·장애수당 과다 지급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최종지급일	과다지급액	비고
계		18명				5,479,500	
		소계	15명			5,359,500	
기초연금	1	○○○	1900.00.00.	2020.00.00.	2021.00.00.	120,000	4개월 과다
	2	○○○	1900.00.00.	2020.00.00.	2020.00.00.	300,000	1개월 과다
	3	○○○	1900.00.00.	2021.00.00.	2021.00.00.	300,000	1개월 과다
	4	○○○	1900.00.00.	2021.00.00.	2021.00.00.	300,000	1개월 과다
	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6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단위 : 원)

3) 소급기한(5년)에 따라 과소지급액은 60개월분(2017년 11월~2022년 10월) 적용

	7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1개월 과다
	8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9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10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1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1개월 과다
	12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13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14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1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장애수당	소계	3명				120,000	
	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40,000	1개월 과다
	2	○○○	1900.00.00.	2020.00.00.	2020.00.00.	40,000	1개월 과다
	3	○○○	1900.00.00.	2022.00.00.	2022.00.00.	40,000	1개월 과다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5.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과소 지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소급 지급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 하는 등 그 귀책 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지침 급여지급 절차 편에 따르면 담당자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소득인정액, 가구원 변동, 전출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고,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실태 등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0. 0. 00.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2020년 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분인 300,090원을 누락한 채 2020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중이다.

## 6.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사업 연간조사계획 미수립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11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조사 편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급여 사후관리 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관내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 조사 업무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4]와 같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사업에 대한 연간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21년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사업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사업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표 4]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사업 연간 조사계획 수립 현황(2021년~2022년 10월)

구분	연도	연간조사계획 수립 여부(수립일)
기초연금사업	2021년	부
	2022년	2022. 0. 00.
장애인연금사업	2021년	부
	2022년	부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자격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 등을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여 급여를 과소·과다 지급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수급자 188명에게 장제급여 등 과소 및 미지급된 사회보장급여 150,820,09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18명에 대하여 5,479,5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매년 기초연금사업과 장애인연금사업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등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계 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행정○○○ ○○○(1900. 00. 00.)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1998. 7. 16. ○○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1]과 같이 팔영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였다.

[표 1] 팔영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

(단위 : ha, 백만원)

위치	부지면적	조성사업비	개장일	시설현황
고흥군 ○○면 ○○로 0000-00	187	7,103	1998.07.16.	·숲속의 집 12동, 산림문화휴양관 1동(8실), 야영장 1개소, 주차장 2,000㎡, 기타 부대시설 등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행정○○○ ○○○은 2000. 00. 00.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자연휴양림 운영 관련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 2.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훈련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 예방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휴양시설에 대해 철저한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자연휴양림의 재난·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면서 재난·사고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단 한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책임자 또한 지정하지 않은 채 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산 자연휴양림에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 3.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실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는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하여 매일점검<sup>1)</sup>, 월별점검<sup>2)</sup>, 반기점검<sup>3)</sup>, 특별점검<sup>4)</sup>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휴양림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산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산 자연휴양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일점검 및 월별점검 등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2]와 같이 매일점검, 월별점검 등 팔영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매일점검을 제외한 자체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질 직원에 대한 예방 교육과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훈련 또한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산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연도별	구분	자체점검		안전사고 예방교육	모의훈련 여부
		매일점검	월별점검		
2019년	상반기	여	부	부	부
2020년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2021년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2022년	상반기	여	부	부	부
	하반기	여	부	부	부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소속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1) 매일점검 :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 건축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
- 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
- 3)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
- 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휴양림에 집중호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고립되거나,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한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체점검 등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소방서 등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임도시설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계 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 ○○○(1900. 00. 00.)

내 용

**1. 업무개요**

고흥군은 산림경영과 유지·관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306백만원의 보조금으로 [표 1]과 같이 9건의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임도시설사업 추진 현황(2019년 6월~2022년 10월)

(단위 : km,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자
계	9건	11.62	2,305,667		
1	2020년 ○○면 ○○산 ○○○○ 개설사업	1.20	178,072	0000.00.00.~0000.00.00	○○○○○○○
2	2020년 ○○ ○○지구 ○○○○ 개설사업	1.36	288,243	0000.00.00.~0000.00.00	○○○○○○○
3	2020년 ○○ ○○지구 ○○○○ 개설사업	1.96	333,445	0000.00.00.~0000.00.00	○○○○○○○
4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80	166,069	0000.00.00.~0000.00.00	○○○○○○○
5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2.14	343,383	0000.00.00.~0000.00.00	○○○○○○○
6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1.40	265,662	0000.00.00.~0000.00.00	○○○○○○○
7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94	216,293	0000.00.00.~0000.00.00	○○○○○○○
8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22	65,036	0000.00.00.~0000.00.00	○○○○○○○
9	2022년 ○○ ○○지구 ○○○○ 개설사업	1.60	449,464	0000.00.00.~0000.00.00	○○○○○○○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는 00. 00. 00.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  
○과에서 ○○○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 2. 임도 암반선(巖盤線) 확인 등 암(巖)판정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 「임도 시공·관리 업무매뉴얼」 III. 3. 공사 감독·관리 편에 따르면 공사 시행단계 업무에서 공사감독자는 설계 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수급자, 감리자와 함께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을 실시하여 암(巖)판정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임도 시설공사 표준시방서」 제3장. 3-2. 암막기 편에 따르면 암막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현장감독관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암(巖)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 경계선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공사 시공 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수급자 등과 함께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시험을 실시하여 암(巖)판정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암막기 작업 중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의 분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로 구성된 암(巖)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 분류를 확정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20년 ○○  
○○지구 ○○○○ 개설사업 등 [표 2]와 같이 6건의 ○○○○사업에서 암반선이 노출되어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수급자, 감리자와 함께 암반선을 직접 육안으로 암반선 확인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암(巖)판정위원회의 공동조사 절차 없이 암반선을 확정하여 당초 암반 물량 9,822㎡에서 7,432㎡가 증가된 17,254㎡으로 임의 확정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임도시설사업 암반 노출로 설계변경 현황(2020년 6월~2022년 10월)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암반 물량변경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여부
				당초	변경	증감	
계	6건		1,695,864	9,822	17,254	증 7,432	
1	2020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288,243	2,510	3,849	증 1,339	부
2	2020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333,445	1,773	4,270	증 2,497	부
3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343,383	2,362	3,538	증 1,176	부
4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216,293	1,074	1,236	증 162	부
5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65,036	422	699	증 277	부
6	2022년 ○○ ○○지구 ○○○○ 개설사업	0000.00.00.~ 0000.00.00.	449,464	1,681	3,662	증 1,981	부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노출된 암반선 확인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변경된 공사비의 산정에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입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맞게 임도(간선·지선·작업임도) 시설의 설계 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맞게 절·성토면 및 노면의 구조물을 반영하여야 하고, 노면·절토 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반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임도시설의 설계 시 노면·절토 대상지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과 그 뿌리, 표토 등을 전량 제거·반출될 수 있도록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표 3]과 같이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등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도시설의 설계에 입목의 뿌리와 가지 등 입목부산물 처리비 전액 제거·반출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에 계상하지 않았다.

[표 3] 임도시설사업 추진 시 입목부산물 처리비 미계상 현황(2021년 5월~2022년 4월)

(단위 : km,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자	입목부산물 처리비	
						반영여부	미반영 처리비
계	3건	4.34	775,114				18,002
1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0.80	166,069	0000.00.00.~ 0000.00.00.	○○○○(주)	부	3,736
2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2.14	343,383	0000.00.00.~ 0000.00.00.	○○○○○○○	부	8,885
3	2021년 ○○ ○○지구 ○○○○ 개설사업	1.40	265,662	0000.00.00.~ 0000.00.00.	○○○○○○○	부	5,381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잘라낸 나무와 그 부산물(가지, 뿌리) 일부가 현장에 존치되어 집중호우·태풍·산불 등에 의한 2차 피해에 취약한 형태의 임도구조를 갖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4. 임도 주요시설물 점검 미실시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도 노선별로 노면 및 절·성토면 등 기타 시설물의 상태를 매년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년 2회 이상 관리 대상인 임도 56개 노선(160.39km)에 대하여 노면 및 절·성토 등 임도 주요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도를 보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임도 56개소 노선(160.39km)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노면 및 절·성토면 등 임도의 주요시설물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임도 노면 균열 등 주요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임도시설사업 암반선 확인절차 미준수, 입목부산물 처리비 설계 미반영, 임도시설물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임도시설사업 추진 중 암반이 노출되면 암반정위원회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임도 암반선을 확인하고, 입목부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에 입목부산물 처리비를 계상하며, 매년 2회 이상 임도의 주요 구조물을 점검하는 등 임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불법산지전용 행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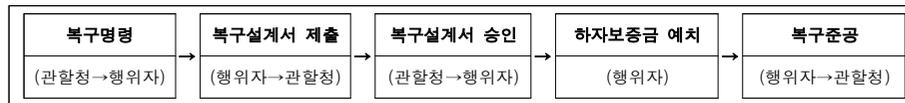
훈계 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 ○○○(1900. 00. 00.)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6건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복구명령 등 행정처리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림] 불법산지전용 행위 행정처리 절차



자료 : 「산지관리법」 내용 재구성

지방○○○○ ○○은 00. 00. 00.부터 00. 00. 00. 감사일 현재까지 환경산림과에서 불법산지전용 행위자 행정처리 등 산림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등 허가권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 처분을 받은 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

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 가능한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복구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구준공 검사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허가권자로부터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없이 산지를 전용한 자가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가 적정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명령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 등이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적합할 경우 승인하며,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면 복구준공검사 실시하고,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별표]와 같이 고흥군 ○○면 ○○리 산0번지 등 26건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6건은 복구명령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15건은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17건은 복구설계서의 승인 없이 복구를 진행하였고, 21건은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복구의무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지 않았는데도 불법산지

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준공검사를 완료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등 적절한 행정조치 소홀로 2019년 2건, 2020년 10건, 2021년 5건, 2022년 9건 등 산지에서의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승인,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불법산지전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위자에게 복구명령하고, 복구의 무자로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관련 행정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산 치유의 숲 명상쉼터 조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고흥군은 00년 00월부터 00년 00월까지 [표]와 같이 28,000백만원의 보조금으로 ○○산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00. 00. 00. 정식 개장한 이후 ○○산 치유의 숲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 ○○산 치유의 숲 조성 현황

(단위 : ha, 백만원)

위치	부지면적	조성사업비	개장일 (조성기간)	주요 시설현황
고흥군 ○○면 ○○리 산00-0	100	28,000	0000.00.00. (2015.~2019.)	·테라피센터 2동, 치유숲길 8.4km, 명상쉼터 5동, 기타 부대시설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에 따르면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운영 매뉴얼」 제3편 1. 치유의 숲의 계획 및 설계 편에 따르면 치유의 숲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치유의 숲 내 명상쉼터 등 주요시설 등이 숙박시설의 형태

를 갖추지 않도록 조성·운영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00년 00월부터 00년 00월까지 치유의 숲 내에 5동의 명상쉼터를 조성하면서 치유의 숲을 찾는 이용객이 설 공간이 필요한 사유로 [사진]과 같이 거실, 안방,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춘 숙박시설 형태로 명상쉼터를 조성하여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사진] ○○산 치유의 숲 내 명상쉼터 내·외부 현황



자료 : 고흥군 정기종합 감사기간 중 현장 출장 확인(2022.11.25.)

그 결과 치유의 숲을 찾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인 명상쉼터가 목적에 맞지 않는 펜션형 숙박시설로 무단 이용될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치유의 숲 내 이용객을 위한 공간인 명상쉼터가 펜션형 숙박시설로 무단 이용되지 않도록 출입관리 강화 등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전라남도 고발·징계·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일상경비 횡령 등 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징계 대상자** 고흥군 ○○○○○○ ○○○ ○○○(1900. 00. 00.)  
(前 ○○○과, 前 ○○○과)

**징계의 종류** 중징계

**훈계 대상자** ① ○○○실 지방○○○○○ ○○○(1900. 00. 00.)

② ○○○○실 지방○○○○○ ○○○(1900. 00. 00.)  
(前 ○○○과, 前 ○○○과)

③ ○○○○실 지방○○○○○ ○○○(1900. 00. 00.)  
(前 ○○○과, 前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획실에서 세출예산을 각 부서별로 배정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부터 일상경비를 요청받아 일상경비를 배부하여 각 부서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은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00년 0월부터 00. 00. 00.까지 자연휴양림 관리 업무를 보조하였고, 지방○○○○○ ○○○는 00. 00. 00.부터 00. 00. 00.까지 ○○○과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근무

무하였으며, 지방○○○○ ○○○은 2000. 00. 00.부터 2000. 00. 00.까지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 일상경비 점검 미실시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sup>1)</sup>을 임명하여야 하고,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고흥군 회계책임관은 기획실장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에 따르면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의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감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정하거나 다른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고,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1)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책임관(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실)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각 부서의 세출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로 인하여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부통제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일상경비로 구입한 물품 분실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출납원<sup>2)</sup>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sup>3)</sup>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흥군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유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물품관리관은 재무과장, 물품출납원은 재무과 물품관리 담당업무 주사,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실·과 서무담당주사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각 실·과 서무담당주사)이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

2)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에 따르면 출납원은 각 실·과·단·소 서무업무팀장으로 지정

3)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2]에 따르면 지출원은 경리팀장으로 지정

성하여 물품출납원(재무과 물품관리 담당업무 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재무과 물품관리 담당업무 주사)은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 후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재무과장)은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2. 11. 23.~12. 1.) 중 [표 1]과 같이 ○○○과 00. 00. 00. 일상경비 1,740천원(각 870천원)으로 구입한 ○○○ ○○○ 이동식 CCTV 열람 태블릿 PC 2대<sup>4)</sup>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흥군(○○○과)은 고장난 태블릿 PC 1대를 일자 미상에 분실하였으면 사유를 기재하여 분임물품출납원(○○○과 서무담당주사)이 즉시 물품출납원(재무과 물품관리 담당업무주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표 1] ○○○과 일상경비로 구입한 물품 분실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집행내역	구입금액	구입일자	분실일자
1	○○○과	○○○ ○○○ 이동식 CCTV 열람 태블릿 PC 2대구입	1,740 (각 870)	2021.03.05.	미상 <sup>5)</sup>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물품의 분실·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일상경비 집행 대상이 아닌 물품 제조·구매 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의 5. 분할계약의 금지 라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4) 1대는 현 CCTV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 중

5) ○○○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2022. 11. 29.)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 2항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되, 일상경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일상경비 등으로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 등 3개 부서)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재무과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8건의 물품(500만원을 초과하는 단일 사업)에 대해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2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일상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고,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과**

○○○○과는 0000. 00. 00. ○○○ ○○○ 송신기(비상벨 등)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 ○○○과 거래하면서 비상벨과 비상등, 안내판 등 일체의 설치비용 총 7,260천원을 재무과를 통하여 계약 후 집행해야 하는데도 0000. 00. 00. 동일 날짜에 2,420천원과 4,840천원 2건으로 분리하여 일상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등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표 2]와 같이 총 6건 55,785천원의 물품 제조·구매를 부당하게 13건으로 분리하여 일상경비에서 집행하였다.

[표 2] ○○○○○과 물품 제조·구매 일상경비 분리 집행 현황(2020년 8월~2021년 6월)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집행내역	집행일	금액	구입처	계획수립문서
계		6건	10회, 13건	55,785	4개소	

연번	연도	집행내역	집행일	금액	구입처	계획수립문서
1	2020	○○○○ ○○○○ 송신기(○○○ 등) 설치비 집행	0000.00.00.	2,420	○○○ (○○○)	○○○○과 -0000호 (0000.00.00..)
2				4,840		
3	2021	○○○○ ○○○○ 송신기(○○○ 등) 설치비 집행	0000.00.00.	4,400	○○○ (○○○)	○○○○과 -0000호 (0000.00.00..)
4				2,200		
5		○○○○ ○○○ 스마트 ○○○○ 구입비 집행	0000.00.00.	4,972	주○○○	○○○○과 -0000호 (0000.00.00..)
6				4,950		
7		공중화장실 ○○○○ ○○○ 등 구입비 집행	0000.00.00.	4,950	○○○ (○○○)	○○○○과 -0000호 (0000.00.00..)
8				2,370		
9				4,930		
10		공중화장실 ○○○○ ○○○○ ○○○ 설치비 집행	0000.00.00.	4,880	○○○○ (○○○)	○○○○과 -0000호 (0000.00.00..)
11				4,880		
12		공중화장실 ○○○○ 구입비 집행	0000.00.00.	4,997	○○○○ (○○○)	○○○○과 -0000호 (0000.00.00..)
13				4,996		

자료 : 고흥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체

## 2) ○○○○과

○○○○과는 0000. 00. 00. ○○과 ○○간 ○○○○ ○○○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와 거래하면서 [표 3]과 같이 관내 6개소에 ○○○○○ ○○○ 설치비용 총 9,294천원을 재무과를 통하여 계약 후 집행해야 하는데도 2019. 10. 31. 4,647천원, 2019. 11. 28. 4,647천원 등 물품 제조·구매를 부당하게 2건으로 분리하여 1개월의 간격을 두고 일상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다.

[표 3] ○○○○과 물품 제조·구매 일상경비 분리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집행내역	집행일	금액	구입처	계획수립문서
계		1건	2회 2건	9,294	1개소	
1	2019	○○○○과 ○○ 간 ○○○○품(○○○○○) ○○○○ 구입	2019.10.31.	4,647	(○)○○	○○○○과 -0000호 (2019.09.27.)
2			2019.11.28.	4,647		

자료 : 고흥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체

## 3) ○○○○과

○○○○과는 ○○○○용 물품을 구매(배부)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구입처)에서 ○○○○, ○○○ 등 7,000천원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재무과를

통하여 계약 후 집행해야 하는데도 [표 4]와 같이 2020. 5. 29. 4,200천원, 2020. 6. 9. 2,800천원 등 물품 제조·구매를 부당하게 2건으로 분리하여 10일의 간격을 두고 일상경비(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다.

[표 4] ○○○○과 물품 제조·구매 일상경비 분리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집행내역	집행일	금액	구입처	계획수립문서
계		1건	2회 2건	7,000	1개소	
1	2020	○○○○○용품 구입비 집행 (○○○○ 420만원, ○○○ 280만원)	2020.05.29.	4,200	○○○○	구매(배부) 계획 없이 집행
2			2020.06.09.	2,800		

자료 : 고흥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체

그로 인하여 물품 계약 및 제조·구매 시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부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등 지출 업무의 투명성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5.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지 않는 일상경비 지출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및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 가목 및 라목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집행하지 않아야 하며, 피복비는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여야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청원경찰 복장 등은 각 과에서 개별 구입하지 않고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출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하여 정해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 등 3개부서)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컴퓨터·에어컨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고,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개별부서에서 구입했으며, 근무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원 외의 자에게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복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총 3개부서 28건 70,662천원이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과

○○○○과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5]와 같이 ○○○○○시설 환풍기, 선풍기 등을 구입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할 8건, 23,900천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5] ○○○○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불일치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집행내역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금액	집행일
1	○○○○○시설 환풍기, 선풍기 설치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20	2020.07.21.
2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0	2021.02.18.
3	○○○산 ○○○○○ 전산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0	2021.02.18.
4	○○○시설 점검 전산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	2021.02.18.

연번	집행내역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금액	집행일
5	○○○ CCTV 열람 태블릿 PC 구입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40	2021.03.05.
6	○○산 ○○○○○ 냉난방기 구입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14	2021.03.12.
7	○○산 ○○○○○ 가구 제작 설치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	2021.03.25.
8	○○산 ○○○○○○○ 방송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66	2021.06.01.

자료 : 고흥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췌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6]과 같이 ○○○○단속요원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구입해야할 10건, 30,596천원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6] ○○○○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불일치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집행내역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금액	집행일
1	○○○○○○요원 근무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964	2019.11.14.
2	○○○ ○○○ 근로자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460	2020.05.06.
3	○○○ ○○ 작업단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4,100	2020.05.06.
4	○○○○○ 현장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255	2020.03.31.
5	○○○○○ 작업단 여름철 작업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660	2020.06.25.
6	○○○ ○○ 작업단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4,752	2022.03.31.
7	○○○○○○근로자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613	2022.03.31.
8	○○○ ○○ 작업단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398	2022.03.31.
9	○○○○○○ 근로자 안전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2,335	2022.07.14.
10	○○○○○ 안전장비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	4,059	2022.06.30.

자료 : 고흥군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발췌

## 2) ○○○○과

○○○○과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7]과 같이 ○○○○○ 동계 근무복 구입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구입해야 할 6건, 11,040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7] ○○○○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불일치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적요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지출금액	지급일자
1	고흥 ○○ ○○○동계 근무복 구매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02	2019.12.04.
2	○○○○○○○ 단체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914	2019.11.12.
3	고흥 ○○ ○○○ 직원 유니폼 구매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76	2020.11.19.
4	○○○○ ○○○ 직원 근무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90	2022.07.04.
5	○○○○ ○○○ 직원 근무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314	2022.11.09.
6	○○○○○ 근무자 하계 근무복 구입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44	2022.08.09.

자료 : 고흥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발체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8]과 같이 ○○○○팀 청원경찰 피복비 구입 등 3건, 1,837천원을 ○○○○○요원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 8] ○○○○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불일치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적요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지출금액	지급일자
1	○○○○팀 청원경찰 피복구입비	사무관리비	회계부서에서 집행	645	2020.01.23.
2	○○○○○ 운영 피복비(청경복) 집행	사무관리비	회계부서에서 집행	592	2020.03.05.
3	○○○○○ 운영 피복비(청경복) 집행	사무관리비	회계부서에서 집행	600	2021.01.29.

자료 : 고흥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발체

## 3) ○○○○과

○○○○과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9]와 같이 ○○○○○○ 운영 ○○○○○ 방한복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무복을 구입하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구입해야 할 1건, 3,289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다.

[표 9] ○○○○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불일치 명세(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적요	지출통계목	집행기준 통계목	지출금액	지급일자
1	○○○○○○○ 운영 ○○○○○ 방한복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289	2019.12.09.

자료 : 고흥군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발체

그로 인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6. 일상경비 업무상 횡령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고흥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2항에 따르면 군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고, 부패행위 유형별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67조2의 4항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근로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을 사용할 때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은 컴퓨터를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면서 물품납품서의 품목과 실제 납품 받은 품목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① 2020. 00. 00. [표 10]과 같이 일상경비 3,860천원(각 1,930천원)으로 ○○산 ○○○○ 체험장에서 사용할 컴퓨터와 모니터 각 2대를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납품서의 품목(○○○○○○컴퓨터, ○○○○ 모니터)과 실제 납품 받은 컴퓨터(○○컴퓨터, ○○모니터)의 품목이 다름에도 지출서류와 같은 물건을 수령한 것처럼 2020. 00. 00. 검수하여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 물품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다.

[표 10] “생 략”

② 2021. 0. 00. [표 11]과 같이 일상경비 1,930천원으로 ○○○○숲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납품서의 품목(○○○○○컴퓨터, ○○○○ 모니터)과 실제 납품 받은 컴퓨터(○○컴퓨터, ○○모니터)의 품목이 다름에도 지출서류와 같은 물건을 수령한 것처럼 2021. 0. 0. 검수하여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다.

[표 11] “생 략”

③ 2021. 0. 00. [표 12]와 같이 일상경비 1,930천원으로 ○○산 자연휴양림 예약 및 인력관리용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물품납품서의 품목(○○○○○○컴퓨터, ○○○○ 모니터)과 실제 납품 받은 컴퓨터(○○컴퓨터, ○○모니터)의 품목이 다름에도 지출서류와 같은 물건을 수령한 것처럼 2021. 0. 0. 검수하여 상급자의 확인을 받아 물품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였다.

[표 12] “생 략”

한편 위와 같이 지출서류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차액 중 일부(1,000천원)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일상경비 횡령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회계 업무 처리에 부정이 발생하는 등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7.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 ○○○은 2019. 1. 10.부터 2021. 1. 31.까지 ○○○○과에 근무하면서 ○○○○팀에서 근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 31.까지는 ○○○○팀에서 ○○○○○, ○○○○ 관리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21. 0. 00. ○○○○ 컴퓨터와 2021. 0. 00. ○○○○ 컴퓨터 2대를 일상경비 3,860천원으로 구입하면서 [표 13]과 같이 지출 서류의 모델보다 저가 사양의 컴퓨터(2,480천원 상당)를 납품받아 상급자(지방○○○○○ ○○○, 지방○○○○ ○○○)의 결재를 받았고, 차액 1,380천원 중 1,000천원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 받아 이를 계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sup>6)</sup>

[표 13] “생 략”

그로 인하여 일상경비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일상경비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지출서류와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 그 차액 중 일부를 횡령한 ○○직 ○○○의 행위는 「고흥군 공무원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조에 위배 된 것으로 같은 규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6) ○○○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22. 11. 28.), ○○○과의 문답서('22. 12. 13.)에서 확인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민간위탁금(307-05)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석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써 보조금 관계법령과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사업목적에 맞게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을 성질별로 명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 등 8개과)은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민간위탁사무 세출예산 편성목 분류 명세”와 같이 ○○○ 활용 ○○○○ ○○○○ ○○ ○○서비스사업 등 65개 사업비 35,162백만원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민간위탁금(307-05)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민간위탁업무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 미이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

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 ○○과)은 [표 2] “민간위탁사무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사업 및 ○○○ ○○○○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모집 등의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공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고흥○○○○○○에 4,143백만원과 (사)○○○○○○○위원회에 2,110백만원의 예산을 각각 부적정하게 지원하였다.

[표 2] 민간위탁사무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위탁 사무명	사업 연도	예산액	수탁기관	선정 절차		협약서	
					공개모집 여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여부	체결일	공증 여부
○○ ○○과	○○○○ 사업	2019~2022	4,143	고흥○○ ○○○○	자활사업 지침에 공모절차없이 위탁가능	미개최	미체결	부
○○과	○○○ ○○○○ 운영	2019~2022	2,110	(사)○○○ ○○○○ 위원회	미공개	미개최	미체결	부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고흥군(○○○○과 등 6개 부서)은 [표 3] “민간위탁사무 협약서 공증 미이행 현황”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 ○○서비스사업 등 11개 위탁사업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도 협약서 공증을 하지 않았다.

[표 3] 민간위탁사무 협약서 공증 미이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업연도	위탁사무명	예산총액	수탁기관
계	6개 부서			37,200	

1	○○○○과	2019	○○○○ ○○서비스	1,543	○○○○○○○○
2	○○○○과	2019~ 2020	○○○○○사업	15,511	○○○○○ 등 3
3	○○○○과	2019~ 2020	○○○○ ○○○○ ○○서비스	618	○○○○○○○○
4	○○○○과	2019	○○○ ○○○○○사업	257	○○○○○
5	○○○○과	2021~ 2022	○○○○ 센터 운영	515	고흥○○○○○
6	○○○○과	2019~ 2022	○○○○ 공공○○○○시설 운영	858	㈜○○○○○○
7	○○○○○과	2019~ 2022	○○○○ 지원	3,729	고흥○○○○○
8	○○과	2022	○○음 ○○○○ ○○	434	○○회사○○외○○인
9	○○○○사업소	2020~ 2022	○○ 공공○○○○○ 운영	238	○○○○○○○(주)
10	○○○○사업소	2019~ 2022	○○ 공공○○○○○ 운영	9,237	○○○○○○○(주)
11	○○○○사업소	2019~ 2022	면○○○○○ 운영	4,260	㈜○○○○○○ 등 1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공개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으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협약서 공증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별표] 생 략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 기본서비스 등 11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시정)

② 앞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사무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안 공증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하고, 민간위탁사무 예산집행 시 세출예산 편성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 ○○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 간소화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0000. 00. 00. 고흥 ○○○○단지<sup>1)</sup> 개발실시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권자로서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고흥 ○○○○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또한 고흥 ○○○○단지 조성사업은 (주)○○○○○○(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산업단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sup>2)</sup>(2021. 00. 00.)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4. 00. 00.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2021. 00. 00. 제출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1) 사업개요
- 위 치 : 고흥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 면 적 : 149,971㎡(임야 136,537㎡, 기타 13,434㎡)
  - 사 업 량 : 산업시설용지 90,047㎡, 공공용지 26,532㎡, 공원·녹지 32,892㎡, 지원시설용지 500㎡
  - 유치업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사 업 비 : 175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21. 12. 30. (\* 최초 사업기간 2012. ~ 2016. 00. 00. 총 2회 기간연장)
  - 사업시행자 : (주)○○○○○○○○(민간개발방식)

2) 최초 2016. 00. 00.까지, 1차 연장 2018. 00. 00.까지, 2차 연장 2021. 00. 00.까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4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안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6조에 따르면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과)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협의에 착수하여야 하며, 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고,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했다.

##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1. 00. 00.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 보완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00일이 경과 된 2022. 0. 00. 보완 요구를 하였다.

또한 2022. 0. 00. 보완서류가 제출되자 관련 분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지 않고, 2022. 0. 00. 전라남도지사에게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하고, 2022. 0. 00. 국토교통부 등 4개 기관 17개 부서에 관계기관<sup>3)</sup>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 보완 요구사항<sup>4)</sup>에 대하여 2022. 5. 9.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일로부터 335일이 경과 된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고흥 0000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고, 승인 여부 불투명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관련기관(부서) 협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① 국토교통부 1개 부서(0000000000), ② 전라남도 9개 부서(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③ 고흥군 7개 부서(상·하수도사업소, 00과, 00과, 0000과, 0000과, 0000과, 0000과), ④ 한국수자원공사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증빙 자료, 토석채취허가증, 책임준공 보증서 또는 PF대출 확약서, 자금조달계획, 상수도 공급계획,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 제 목 물품 구매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00과, 0000과)

훈계 대상자 고흥군 00과 지방0000 000(1900. 00. 00.)

고흥군 00과 지방0000 000(1900. 00. 00.)

##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물품 구매계약 현황’과 같이 고흥군 00 000000 구매 등 3건의 물품 구매계약을 약 463,847천원에 체결하였다.

[표] 물품 구매계약 현황(2022년 5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량	계약일	납기일	이행일	검사일	해당 부서
계	3건	463,847						
1	2022년 고흥군 000000 000000 구매 설치	98,738	8개소	'22.07.27.	'22.09.15.	'22.09.15.	'22.09.23.	00과
2	고흥군 00(000) 0000 0000 제작 설치	346,032	30개소	'22.07.07.	'22.10.05.	'22.10.05.	미검사	
3	고흥 0000(0000) 운영을 위한 물품(000) 구입	19,077	15대	'22.05.30.	'22.06.29.	'22.06.22.	'22.06.28.	00 00과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0000 000은 2022. 7. 1.부터 2022. 12. 1.감사일 현재까지 00과

에서 ○○ ○○○○○○ 설치 업무 등 ○○○○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 ○○○은 2020. 1. 2.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 구매·설치 업무 등 ○○○○팀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 2. 물품 납품 및 검사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물품계약 후 그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받았으면 14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검사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 ○○ ○○○○ ○○○○ 설치 건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 사실을 2022. 00. 0. 통지받았는데도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0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00일이 도과한 후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2. 00. 00. 이행여부 검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고흥군(○○과)은 2022년 고흥군 ○○ ○○○○○○ 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계획된 ○○○○○○ 8개소에 대하여 이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서 6개소만 설치를 완료하고, 2개소는 물품 납기일인 2022. 0. 00.부터 00일이 도과한

2022. 00. 0. 설치를 완료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에 대한 대가 97,738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로 인하여 ○○○○○○을 설치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한 대금 24,684천원을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고, 계약 이행사실 검사를 지연하여 처리함으로써 대금 346,032천원을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정수물품 구매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은 2022. 0. 0. 2022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협조를 각 부서에 요청<sup>1)</sup>하면서 노트북컴퓨터를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정수관리대상물품인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려면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배정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년도 예산에 ○○ ○○○○ 등 교육용 컴퓨터구입 목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2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컴퓨터가 아닌 노트북컴퓨터 15대를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1) 고흥군 ○○○과-000(2022.00.00.) 「2022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협조 요청」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구입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 ○○○○○○○○ 납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과 ○○○○○이 미설치 되었는데도 ○○○○설치 대가를 지급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입할 경우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및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 훈계대상자**
- ① 고흥군 ○○과 지방○○○○ ○○○(1900. 00. 00.)  
(前 고흥군 ○○○과)
  - ② 행정안전부 지방○○○○ ○○○(1900. 00. 00.)  
(前 고흥군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 1]과 같이 4개 마을기업에 공장증축 및 제조시설·기계 구입 등을 위하여 보조금 94,000천원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

[표 1] 마을기업 지원 현황(2019~2020년)

(단위 : 천원)

연도	마을기업명	보조사업비				자부담	지원내용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개 기업	94,000	30,000	26,000	38,000	18,800	
2019년	○○○○법인(○)○○○	30,000	15,000	4,500	10,500	6,000	공장증축, ○○가공기계 등
	○○ ○○○○법인	18,000	-	9,000	9,000	3,600	○○기 등, 리플릿 등
2020년	○○○○○○○○○법인	30,000	15,000	4,500	10,500	6,000	○○○○기,포장기 등
	○○○○○○○○○조합	16,000	-	8,000	8,000	3,200	저온저장고, 리플릿 등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보조금 정산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Ⅱ 마을기업의 관리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편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금법」 과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지자체 조례(이하 “보조금 관련 법

령”이라 한다)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③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등에 시·군·구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 보조사업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산절차를 진행하며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sup>1)</sup>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④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편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포함된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 자부담 비용을 집행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해당 보조사업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의 실적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절차를 진행하여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심사 결과 해당 보조사업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한편 고흥군은 0000. 00. 00. ○○○○법인 (○)○○○(대표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증축<sup>2)</sup> 및 ○○가공기계 구입을 목적으로 보조금 30,000천원과 자부담 6,000천원 등 총사업비 36,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해 9. 9. 보조금 30,000천원을 교부하였으며, 2020. 3월경<sup>3)</sup> [표 2]와 같이 (○)○○○으로부터 38,418천원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 9. 25. 일부개정, 시행 2017. 9. 25.)

2) 공장증축 예정부지 : 고흥군 ○○면 ○○○길 00-00번지

3) 군 ○○○○과에서 ○○○○법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세울행정시스템에 접수하지 않아 실적보고서가 접수된 정확한 일자는 확인할 수 없음

[표 2] ○○○○법인 (○)○○○으로 제출받은 실적보고서 현황

(단위 : 원)

구분	집행액	비고
계	38,418,214	
○○가공기계구입	4,951,000	○○○산업○○(○○가공기계-○○포장기, 배합기, 분쇄기)
공장증축 자재비	14,038,100	○○총합○○(11,256,600원), ○○철강(2,726,000원), ○○공구○○(27,500원), ○○○○○○판매장(28,000원)
인건비	17,997,000	○○○(1,540,000원), ○○○(680,000원), ○○○(4,355,000원) ○○○(5,880,000원), ○○○(5,112,000원), ○○○(430,000원)
식비	1,432,114	○○○마트, ○○식당, ○○○○○○점 등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 00. ○○○○담당 등 2명이 (○)○○○○에서 추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적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가공기계만 구입하고 공장증축이 완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는데도 [표 3]과 같이 공장증축이 미완공에 따른 보조금 25,876천원을 환수하지 않고 [표 4]와 같이 9,010천원만 환수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3] ○○○○법인 (○)○○○에 대한 정당 정산 및 환수액 현황

(단위 : 원)

구분	보조금				자부담	정산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부 결정(A)	30,000,000	15,000,000	4,500,000	10,500,000	6,000,000	
정당 정산(B)	4,123,840	2,062,920	618,880	1,442,040	825,170	·○○가공기계 4,951,000
정당 반납액(A-B)	25,876,160	12,937,080	3,881,120	9,057,960	-	(이자 별도)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법인 (○)○○○에 대한 부당 정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보조금				자부담	정산내역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부 결정(A)	30,000,000	15,000,000	4,500,000	10,500,000	6,000,000	
정산 결과(B)	20,989,100	10,494,550	3,148,365	7,346,185	6,000,000	·공장증축 22,038,100 -인건비 8,000,000 -자재비 14,038,100 ·○○가공기계 4,951,000
반납액(A-B)	9,010,900	4,505,450	1,351,635	3,153,815	0	(이자 별도)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이번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2. 00. 00. (○)○○○에서 추진한 공장증축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진]과 같이 공장증축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생 략”

그로 인하여 마을기업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으며 부적정한 정산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I 마을기업의 관리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④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편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보조금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중요재산 처분 제한과 반

환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중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중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이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성 물품으로 취득가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취득가액 50만원을 초과한 자산성 물품은 중요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도록 하여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조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표 5]와 같이 ○○○○법인(○)○○○ 등 4개 마을기업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가액 50만원을 초과한 분말가공기계 등 시설·기계 등을 구입한 뒤 중요재산에 대한 장부를 갖추지 않고 있는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표 5]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구입 현황(2019~2020년)

(단위 : 천원)

연도	마을기업명	중요재산 구입 현황	
계	4개 기업	54,101	
2019년	○○○○법인(○)○○○	4,951	·○○가공기계(포장기 1대, 분쇄기 1대) ·○○추출기(3대, 6,710천원)
	○○○○○○법인	18,150	·포장기(2대, 6,710천원), 분쇄기(1대, 2,750천원) ·세척기(1대, 1,980천원)
2020년	○○○○○○○○법인	21,000	·○○기(1대)
	○○○○○○○○○○조합	10,000	·저온저장고(1대)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구입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로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처분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 ○○○,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다른 기관으로 진출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훈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장부에 현재액과 수량을 철저히 기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1]과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2019년~2022년 10월)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19년	43,696	41,908	80	1708
2020년	56,353	54,475	38	1,840
2021년	57,139	55,076	515	1,548
2022년	55,663	53,866	133	1,664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가설건축물 등 취득세 부과 소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sup>1)</sup>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sup>2)</sup>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 1) 제7조 제2항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자경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취득세 경감을 받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자경농민은 2년, 농업법인은 1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가설건축물 신고대장 등을 검토하여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하고, 경감된 취득세는 물건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징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별표 1]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추징 명세”와 같이 ○○회사 ○○○○ 등 16명이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총 16건에 대한 취득세 12,998천원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한 과세 원칙이 저해되고 지방세수 확보 기회가 상실되게 하였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2] “○○○○법인 취득세 감면

세액 미추징 명세”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 후에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5건, 548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별표 3]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세액 미추징 명세”와 같이 자경농민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 후 취득세 과세물건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99건, 48,546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 과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 3.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제35조에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중별 구분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경우에 면허를 발급받는 자에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지하수 굴착행위의 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4] “굴착행위 등록면허세 미추징 명세”와 같이 13건, 234천원, [별표 5]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록면허세 미추징 명세”와 같이 204건, 918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수를 누락하여 공정한 과세원칙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부과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337건, 63,244천원을 부과시키고, 앞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5] 생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 제 목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통보받아 처리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고 있다.

###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소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 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sup>1)</sup>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법령 위반자에게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최소 9천 원부터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sup>2)</sup>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과태료<sup>3)</sup>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일수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1]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00○0000 차량 등 20대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2,59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2]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00○0000 차량 등 4대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6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목적인 법령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폐연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3)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4.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면허·허가·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징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에 대해서는 m<sup>2</sup>당 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자에게 인·허가증을 교부할 때 m<sup>2</sup>당 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역개발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3] “지역개발공채 징구 누락 명세”와 같이 0000. 00. 00.에 ○○○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지역개발공채 5,613천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는 등 21건 237,757천원에 대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지 않아 지역개발기금의 채원 확충을 저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부과 누락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24건 3,235,000원과 지역개발공채 21건 237,757,000원을 부과하시고, 지방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철저히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세입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법 제34조 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4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 소관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세입세출외현금(이자 포함)이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계약보증금 등 보관 시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보관금 반환청구 사실을 소멸시효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에 편입시켜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 ○○○과, ○○○과, ○○○과, ○○○과, ○○○과)은 [별표]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명세”와 같이 2007. 00. 00. 예치한 계약보증금 16,483천원 등 40건 134,105천원에 대하여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에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처리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보관 중인 계약보증금 등 134,105,620원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등 반납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과 어업인 복지를 위해 수○○○○○○시절사업 및 ○○○○○○○지원사업 등 314건, 1,159억 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세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6<sup>1)</sup>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VI.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2] 지방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에 따르면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세입고지서를 발급 요청하여 그 집행잔액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해양수산업 국고보조금 등 잔액 등 미반납 명세”와 같이 28건, 1,141,500,436원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해양수산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어업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국비 집행잔액(1,029,040,940원) 및 이자액(9,430,166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시고 도비 집행잔액(99,210,860원) 및 이자액(3,818,470원)은 전라남도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1) 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제17조 제1항

# 전라남도

## 훈계·시정요구

제 목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 계 대 상 자 고흥군 ○○과 지방○○○○○ ○○○(1900. 00. 00.)  
(前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행정처분 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산업법」 제71조 제1항 따르면 행정관청은 어업종사자나 어획물운반업종사자가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이 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월부터 0000. 00월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 등 10명이 [표 1]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출입항신고 미이행 등으로 적발되어 경고 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를 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 부적정 현황

연번	어선명	어선번호	어업허가	적발내용	성 명	해기사 면허	어업 행정처분 (처분일)	부적정내용
1	○○호	0000000-0000000	연안복합 0000-0000	○○○○○ 미이행	○○○	소형선박 조종사	경고 (2019.00.00.)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 위반
2	○○○호	0000000-0000000	연안복합 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 위반 적재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30일 (2020.00.00.)	"
3	○○○호	0000000-0000000	연안자망 0000-0000	○○○○○ 위반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20일 (2020.00.00.)	"
4	○○호	000000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 위반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20일 (2020.00.00.)	"
5	○○○호	0000000-0000000	연안복합 0000-0000 연안자망 0000-0000	○○○○○ 미신고	○○○	소형선박 조종사	경고 (2020.00.00.)	"
6	○○호	000000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연안복합 0000-0000	○○○○○ 미표기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20일 (2021.00.00.)	"
7	○○○호	000000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 ○○ 등의 제한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30일 (2021.00.00.)	"
8	○○호	000000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의 제한 및 조건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20일 (2021.00.00.)	"
9	○○○호	0000000-0000000	연안통발 0000-0000	○○○ ○○ 적재 위반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30일 (2021.00.00.)	"
10	○○호	0000000-0000000	연안복합 0000-0000	○○○○○○ 위반	○○○	소형선박 조종사	어업정지 20일 (2021.00.00.)	"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해기사 면허정지 등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관리선 행정처분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양식업권자는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을 면허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양식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선을 지정받거나 사용 승인을 받은 양식업권자는 그 사용을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II항 1호 나목 16)에 따르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거나 관리선의 규모와 수, 기관 마력, 그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관리선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양식업면허 경고, 관리선은 정지 30일 처분하고 2차 위반은 양식업면허 경고, 관리선은 취소 처분하며 3차 위반은 양식업면허 취소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양식업권자가 지정받은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관리선을 사용하여 위반·적발한 경우에는 양식업면허 경고와 동시에 관리선에 대하여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 00.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양식장에서 ○○○ ○○ 작업으로 1차 적발된 관리선 ○○호 등 2척에 대하여 [표

2] “관리선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과 같이 양식업면허만 경고 처분하고, 관리선 2척에 대하여 각각 관리선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관리선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위반일자	위반내용	선명	어선번호	위반면허(지정면허)	행정처분	적법한 행정처분
0000.00.00.	지정받지 않은 어선 사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호	00000000-00000000	00000(00000)	어업면허 경고	어업면허 경고 관리선 정지 30일
0000.00.00.	지정받지 않은 어선 사용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	○○호	00000000-00000000	00000(00000)	어업면허 경고	어업면허 경고 관리선 정지 30일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관련 법령을 1차 위반한 관리선에 대하여 정지 30일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를 하지 않은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관리선 사용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 2척에 대하여 30일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등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읍, ○○면, ○○면)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소홀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 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sup>1)</sup>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인 후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면, ○○면, ○○면, ○○면, ○○면)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별표 1]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업회사법인○○○○○○○○회사 등 5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17필지, 26,235㎡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등기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농업경영보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 (○○○○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법인 사업범위)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 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거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새울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울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은 0000. 00월부터 0000. 00월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도 ○○시 ○○○구 거주하는 ○○○은 1,000㎡ 이상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고흥군 ○○읍 ○○리 0000번지 1,704㎡ 등에 대하여 1,000㎡ 이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별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명세”와 같이 21세대가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한 44필지 38,032㎡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게 농지를 과다 취득하게 되어 농

지이용의 효율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21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하여 휴경 등 농지 이용을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3] 생략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 ○○○(1900. 00. 00.)  
(前 ○○○○과 지방○○○○○)

내 용

### 1. 업무 개요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흥군 ○○ ○○○ ○○○ 사업 ○○ 및 ○○○○ ○○ 용역 등 2건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였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고흥군 ○○ ○○○ ○○○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 입찰공고와 다른 심사기준 적용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대로 제안서의 정량적 지표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 00. ‘고흥군 ○○ ○○○ ○○○사업 ○○ 및 ○○○○ ○○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별표 1] 과 같이 입찰공고1)에 명시한 제안서 정량적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 상 참여인력의 전문성 평가지표(5점)를 임의로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지표(6점)로 변경하는 등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여 [표 1]과 같이 정량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1] 고흥군 ○○ ○○○ ○○○사업 ○○ 및 ○○○○ ○○ 용역 평가 현황

(단위 : 점)

구분	고흥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 제안서 평가 결과	
	(주)○○	(주)○○○○	(주)○○	(주)○○○○
계	79.52 (1순위)	78.28 (2순위)	76.52 (2순위)	77.78 (1순위)
정량적 평가	12.5	13.5	9.5	12
정성적 평가	54.8	50.4	54.8	50.4
가격 평가	12.22	14.38	12.22	14.38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2000. 00. 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00000000000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인 (주)○○○○가 계약 체결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증빙자료 없는 평가자료 인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절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차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 00. 고흥 ○○○○ ○○○○ ○○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이 제출한 정량적 평가자료 중 [별표 3] 과 같이 참여연구진 0명의 10년 이상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등 증빙

자료가 없는데도 보완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경력으로 인정하여 [표 2]와 같이 정량적 평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고흥 ○○○○ ○○○○ ○○ 용역 평가 현황

(단위 : 점)

구분	고흥군 제안서 평가 결과		정당 제안서 평가 결과	
	(○)○○○○	○○○○○○○○○○	(○)○○○○	○○○○○○○○○○
계	86.68 (1순위)	86.2 (2순위)	85.68 (2순위)	86.2 (1순위)
정량적 평가	18	19	17	19
정성적 평가	59.8	57.2	59.8	57.2
가격 평가	8.88	10	8.88	10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정당한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 순위 1순위인 ○○○○○○○○이 계약 체결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입찰공고와 다른 심사기준으로 변경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정량적 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빙자료 없는 평가자료를 부당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략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앞으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시 해당 업체와 3개월 이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통보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2022. 1. 27.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

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sup>1)</sup>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sup>2)</sup> 하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sup>3)</sup>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된 산업보건 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인 안전보건

1)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행정 사업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0. 00. ○○○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은 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이 2022. 0. 0. 에야 제정되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없어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228명인 공공행정 사업장<sup>4)</sup>인 고흥군은 2022. 0. 00. ○○○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으나, 2022. 12. 1. 감사일 현재 산업보건의를 배치(위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제한하거나, 예산의 부족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법적 요건 이상으로 선임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 3. 종사자 의견 청취 후 개선방안 미마련 및 이행점검 등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

4) 공공행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0. 0.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새울행정시스템 내에 중대재해 관련 게시판을 마련하여 비실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종사자 의견 및 재해 예방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종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 0. 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인 10명으로 구성하였으나,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 4.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및 종사자 안전 대책 기준 미수립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며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2. 0. 0. 상황별 응급조치 및 비상 대비 시나리오(떨어짐, 넘어짐, 교통사고, 끼임 등) 8가지 유형만 마련하였을 뿐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비상조치 계획도 미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훈련도 실시하지 않아 문제점 및 조치계획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2. 0. 00.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정하였으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재해발생 초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 예산 등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산업보건의를 배치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기준과 건설업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 계 대 상 자 **고흥군 ○○면 지방○○○○○ ○○○(1900. 00. 00.)  
(前 ○○과 지방○○○○○)**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 9. 1.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방○○○○○ ○○○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 도로 점용 허가 수수료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 도로 무단점용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sup>1)</sup>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sup>2)</sup>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1)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2) 1.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에는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년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허가 명세”와 같이 고흥군 ○○읍 ○○리 000-0번지 등 51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면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그 결과 도로를 무단점용한 현수막으로 인하여 고흥군 행정의 신뢰에 불신을 초래하였다.

## 3.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10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 금액을 1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고흥군 옥외광고 조례”라 한다)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르면 광고물 중 현수막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를 내야 하며, 「고흥군 옥외광고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재 시 현수막 게시시설(10㎡ 이하)의 광고물 등의 신고 수수료는 3,000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광고물 등의 신고를 득하도록 해야 하고, 현수막을 게재할 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1,000원)와 광고물 등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업무를 하면서도 고흥군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에 현수막 게재 신청 접수 시 광고물 신고 수수료만 납부받도록 하였으며,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1,000원을 납부받도록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2019. 0. 0.부터 2022. 10. 31.까지 도로구역 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게재 신청 7,649건에 대하여 [표]와 같이 7,649천원(7,649건×1,000원)의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징수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	신고 건수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미부과·미징수 금액	비고
계	7,649	7,649	
2019. 0. 0. ~ 2019. 00. 00.	1,206	1,206	

2020. 0. 0. ~ 2020. 00. 00.	2,112	2,112	
2021. 0. 0. ~ 2021. 00. 00.	2,408	2,408	
2022. 0. 0. ~ 2022. 00. 00.	1,923	1,923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업무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고물 설치허가 등을 받은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연장허가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르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해당 광고물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조치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표시기간 연장 신청 대상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료를 미리 알려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표시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 등에게는 시정명령을 하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2]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5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종료료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를 훈계하고(**훈계**)
- ② 도로를 무단 점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51개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을 연장 신청하지 않는 관리자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 도로구역 내 지정게시대에 현수막 게시 시에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 전라남도

##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망시설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 ○○○(1900. 00. 00.)

###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19년 ○○○○사업(○○ ○○ 지구) 등 14건의 사망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사망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의 업무 ○○ ○○으로 근무하고 있다.

#### 2. 사망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업무 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방사업법」 제3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사망시설은 사망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고,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sup>1)</sup>의 사망시설과 그 밖에 사망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균열, 누수, 붕괴 등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sup>2)</sup>」 제2장에 시·도지사<sup>3)</sup>는 사망시설의 관

1)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매년 2월 말까지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설관리자로서의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과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균열, 누수, 붕괴 등의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131개소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표 1] 고흥군 사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사방댐	계류보전	해안방재림	해안침식 방지	비고
131	66	47	12	6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과는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사업 사방시설 등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안전 점검은 실시하였는데,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고흥군 ○○면 ○○리 산00번지 사방댐 등 보완·보수대상 26개소 중 시설손상, 누수 등 14개소만 보완·보수 완료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2] ○○○○ ○○○○ 용역 실시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량	용역기간	계약금액	용역사 (대표자)	보완·보수 내역
계	125개소 점검		35,483		26개소 중 14개소 보완·보수, 12개소 미보완·보수
2019 ○○○○ ○○○○ 용역	사방댐 12개소, 사방지 12개소	0000.00.00. ~0000.00.00.	9,530	○○○○ (○○○)	3개소 (보완·보수 완료 3)
2020 ○○○○ ○○○○ 용역	사방댐 24개소, 사방지 7개소	0000.00.00. ~0000.00.00.	9,084	○○○○ (○○○)	11개소 (보완·보수 완료 6, 미완료 5)
2021 ○○○○ ○○○○ 용역	사방댐 27개소, 사방지 8개소	0000.00.00. ~0000.00.00.	9,362	○○○○ (○○○)	8개소 (보완·보수 완료 2, 미완료 6)
2022 ○○○○ ○○○○ 용역	사방댐 28개소, 사방지 7개소	0000.00.00. ~0000.00.00.	7,507	○○○○○○○○○ (○○○)	4개소 (보완·보수 완료 3, 미완료 1)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사방시설 안전점검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활용 및 이행하지 못하여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방시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2) 산림청 2018. 2. 28. 제정

3)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방사업의 시행 권한 위임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검사 공무원은 하자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 [별표] “정기 하자검사 미 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총 29개소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검사를 총 131회 실시하여야 하는데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하자 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다.

### 4. 사방댐 설치사업 등 추진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흥군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에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시행했던 사방댐 설치사업 등 설계도서, 사진, 현장을 살펴본 결과 2개 현장에서 시공 소홀, 미시공 등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사방댐 설치사업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2건			332,000		4,956	
1	2022 ○○○ ○○사업 (○○ ○○○지구)	0000.00.00. ~0000.00.00.	(주)○○○○○ (○○○)	168,000	- 황토 다짐량(116㎡→ 93㎡) 등 미정산	2,330	회수
2	2022 ○○○○사업 (○○ ○○지구)	0000.00.00. ~0000.00.00.	○○○○○○(주) (○○○)	164,000	- 사토 운반량(737㎡→ 442㎡) 미정산	2,626	회수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주)○○○○○(대표이사 ○○○)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한 2022 ○○○ ○○사업(○○ 000지구)(168,000천원)<sup>4)</sup>에서 설계내역서에 황토 다짐량이 116㎡가 반영되었으나, 93㎡만 시공하여 미시공한 23㎡ 등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33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주)(대표이사 ○○○)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한 2022 ○○○○사업(○○ ○○지구)(164,000천원)<sup>5)</sup>에서 설계내역서에 사토 운반

4) 사업규모 : 사방댐 1개소

5) 사업규모 : 계류보전(전석쌓기) 500m 등

량이 737㎡가 반영되었으나, 442㎡만 운반하고 미운반한 295㎡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626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매년 사방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보완·보수대상 12개소에 대하여 응급조치 등을 미 실시하며, 하자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지 않은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정기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응급조치 등을 시행하고, 과다 계상된 4,956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건축 설계용역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과, ○○○단, ○○○실)

- 훈계 대상자**
- ① 고흥군 ○○과 지방○○○○ ○○○(0000. 00. 00.)  
    (前 ○○○단)
  - ② 고흥군 ○○○단 지방○○○○ ○○○(0000. 00. 00.)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 설계용역 총 30건의 예정가격을 작성·심사·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지방○○○○ ○○○은 0000. 00. 00.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단에서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에 있다.

## 2. 계약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제2항 다호에 따르면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고흥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원가 심사<sup>1)</sup>, 저가심사<sup>2)</sup>, 설계변경 심사<sup>3)</sup>, 신기술 등<sup>4)</sup>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건축 설계용역의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결정할 때 계약심사 대상인 경우<sup>5)</sup>에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단 등 4개 부서)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1]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심사 부적정 명세”와 같이 건축 설계용역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심사를 수행하면서 총 7건, 50,249천원<sup>6)</sup>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 3. 계약서에 산출내역서 첨부 소홀

- 1) 공사(추정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미만), 용역(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물품 제조·구매(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민간자본보조(공사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용역 추정 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2)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5)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6) 총 50,249천원(증액 50,217천원, 감액 32천원)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면 용역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붙임서류로는 용역 입찰유이서 1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과업내용서 1부, 산출내역서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 등을 붙임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2] “건축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 미첨부 명세”와 같이 건축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총 13건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건축 설계용역 계약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최초 산출내역서의 부재로 계약금액을 변경하지 못하여 계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계약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 ○○○과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건축 설계용역 계약 시 산출내역서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기획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실)

훈계 대상자    고흥군 ○○과 ○○○○○○○ ○○○(0000. 00. 00.)  
(前 ○○○과)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 ○○○○ 건립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 ○○○○ 건립 실시설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은 [표 1]과 같이 설계비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받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공건축 조성사업 사전 행정절차

설계비 추정 가격	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5천만원~1억원 미만	필수	×	필수	선택
1억원 이상	필수	필수	필수	의무(우선적용)

자료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자료집 발췌

또한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sup>1)</sup>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모방식 우선 적용 대상 외<sup>2)</sup>의 설계를 발주하더라도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설계 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기획 업무는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설계 공모를 실시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고흥군이 정한 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 등 3개 부서)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표 2]와 같이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5건에 대하여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표 2] 공공건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계약 현황(2020년 2월~2022년 10월)

(단위: 천원)

용역명	발주 부서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기획 업무	사전 검토	공공 건축 심의	설계 공모	수행 능력 평가
계	3개 부서	5건						
○○○○ ○○○○ 건립 실시 설계 용역	○○○ ○과	99,440 (87,620)	000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 ○○○ 건립사업 실시설 계 용역	○○○ ○과	75,039 (66,128)	000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 ○○○○센터	○○○ ○과	327,280 (327,280)	0000.00.00.	비대상	비대상	부	여	비대상

1) 건축사,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 한 사람,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적용 대상 외 : 공장, 광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총 추정가격 118,550천원(건축분야 65,072천원, 토목분야 37,636천원, 지반조사 등 15,842)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81,818 (71,635)	000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 ○○ ○○○(고흥○○ ○○공원) 조성공사	○○ ○○실	118,550 <sup>3)</sup> (103,145)	0000.00.00.	부	비대상	부	비대상	비대상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과는 ○○○○ 전용구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추정가격을 정상적으로 산정할 경우 124,630천원으로서 설계공모를 수행하여야 했음에도 임의로 난이도 80%를 곱하여 99,440천원으로 산정한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조성과 관리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의 추정가격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을 추진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용역 추정 가격에 따라 사전행정 절차(건축기획 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를 이행하는 등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전라남도 훈계 요구

## 제 목 문화재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훈계 대상자 ① 고흥군 ○○○단 지방○○○○ ○○○(0000. 00. 00.)  
(前 ○○○)  
② 고흥군 ○○○과 지방○○○○ ○○○(0000. 00. 00.)

##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549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 ○○○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2022 ○○ ○○마을 ○○○ ○○ ○○○○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 ○○○는 0000. 00. 00.부터 0000. 00. 00. 감사일 현재까지 ○○ ○○, ○○ ○○ ○○ ○○○ ○○○ 설치공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sup>1)</sup>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sup>2)</sup>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의 하여야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벗어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과 등 2개 부서)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 2) 1.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작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가.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용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다.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2.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와 같이 2022 〇〇 〇〇마을 〇〇〇 〇〇〇〇 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전라남도 기념물(고흥〇〇〇〇〇〇) 등 2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데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건설공사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연번	문화재명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	문화재 이격거리	사업추진부서
계	2개소	2건			
1	고흥〇〇〇〇〇〇 (도 기념물)	2022 〇〇 〇〇마을 〇〇〇 〇〇〇〇 공사 (0000.00.00.~0000.00.00.)	〇〇면 〇〇리 000번지 일원	연접	〇〇과
2	고흥〇〇〇〇〇〇 (도 기념물)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설치공사 (0000.00.00.~0000.00.00.)	〇〇면 〇〇리 000-00번지 일원	126m	〇〇〇과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〇〇〇〇 〇〇〇와 지방〇〇〇〇 〇〇〇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〇〇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〇〇〇〇실 지방〇〇〇〇〇 〇〇〇(0000. 00. 00.)  
(前 〇〇〇)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sup>1)</sup>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〇〇 〇〇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4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다.

지방〇〇〇〇〇 〇〇〇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〇〇과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기점검 등의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부적정**

###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sup>2)</sup>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

1)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시군 관리 ○○○○ 개보수사업(○○ ○○○)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소홀, 미시공한 52,920천원을 감액 및 회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건설공사 미시공 공정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4건			6,374,000	계 52,920 감액 42,660 회수 10,260		
1	시군관리 ○○○○ 개보수사업 (○○ ○○제)	0000.00.00.~ 0000.00.00.	○○○○○○(주) (○○○)	372,000	- 토공 다짐 미실시 등	15,186	감액
2	○○ ○○지구 국가관리○○○ 개보수사업	0000.00.00.~ 0000.00.00..	㈜○○○○○○ (○○○)	4,025,000	- 토공규준틀 미설치 등	10,260	회수
3	○○ ○○지구 ○○○ 정비사업	0000.00.00.~ 0000.00.00.	○○○○○○(주) (○○○)	922,000	- 전석쌓기 기초거푸집 (합판→유로폼) 조정	9,059	감액
4	○○ ○○지구 지방관리○○○ 개보수사업	0000.00.00.~ 0000.00.00..	○○○○(주) (○○○)	1,055,000	- 투수시험 조정 (200회→78회) 등	18,415	감액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주)(대표이사 ○○○)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 중인 “시군관리 ○○○○ 개보수사업(○○ ○○제)(000,000천원)3)”에서 토

3) 사업규모 : 저수지 보수 보강 1식

공 다짐(램머, 콤팩터) 시공 등을 하지 않아 공사비 15,186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② (주)○○○○○○(대표이사 ○○○)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한 “○○ ○○지구 국가관리○○○ 개보수사업(0,000,000천원)4)”에서 토공규준틀 등을 설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0,26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③ ○○○○○(주)(대표이사 ○○○)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 중인 “○○ ○○지구 ○○○ 정비사업(000,000천원)5)”에서 전석쌓기 기초거푸집(합판거푸집→유로폼) 조정으로 공사비 9,059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④ ○○○○○(주)(대표이사 ○○○)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시공 중인 “○○ ○○지구 지방관리○○○ 개보수사업(0,000,000천원)6)”에서 그라우팅 투수시험(200회→78회) 조정 등으로 공사비 18,415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 3.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시스템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그 대상시설 및 실시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0호) 제3조,

4) 사업규모 : 방조제 개보수 L=1,307m 등

5) 사업규모 : 농로포장 L=4,964m 등

6) 사업규모 : 방조제 개보수 L=272m 등

제4조,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시설관리자<sup>7)</sup>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한 후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영농기 전에는 반드시 실시) 그 결과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표 3]과 같이 230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총 347회(15.9%)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정기점검한 2,175회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기점검 현황(2019년 9월~2022년 10월)

(단위 : 회)

구 분	정기점검 실시			RIMS 관리		비고
	대상	점검	미점검	등록	미등록	
계	230	2,175	347	-	2,175	
2019년	4분기	229	229	-	229	
2020년	1분기	229	203	26	-	203
	2분기	229	216	13	-	216
	3분기	229	210	19	-	210
	4분기	229	164	65	-	164
2021년	1분기	229	212	17	-	212
	2분기	229	177	52	-	177
	3분기	229	190	39	-	190
	4분기	230	177	53	-	177

7)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2022년	1분기	230	181	49	-	181	
	2분기	230	216	14	-	216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유의 활성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등에 따른 인가 절차 미이행 및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기점검을 일부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과다 지급된 10,260,000원을 회수하고,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제) 등 3개 사업에 과다 계상된 42,660,000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점검·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전라남도

## 훈계·시정요구

### 제 목 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과, ○○○과, ○○과, ○○○과)

훈계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 ○○○(0000. 00. 00.)  
(前 ○○○과 지방○○○○)

###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5건<sup>1)</sup>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2. 재해영향평가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sup>2)</sup>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1) ○○○과 2, ○○○과 9, ○○○과 6, ○○○과 1, ○○○과 2, ○○○○사무소 1, ○○○과 1, ○○○과 2, ○○○과 1건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 이상,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 등 9개 부서)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개발 공사를 시작한 25개소 중 단 한차례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았고, 25개소는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준공한 11개소도 준공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위험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재해영향평가등의 이행실태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르면 사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6.2 협의권자의 의무 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하고, 협의권자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미래산업과 등 9개 부서에 통보한 후 이행실태를 단 한차례도 점검·확인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이 갖추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협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미 설치로 개발사업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량 증가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등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과 등 5개 부서에 대해 재해영향평가의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준공 통보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도록 하고, 재난안전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과)

훈 계 대 상 자 고흥군 ○○과 지방○○○○○ ○○○(0000. 00. 00.)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면표시가 포함된 ○○ 군도00호선(○○○○~○○) 재포장공사 등 51건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 현재까지 ○○과에서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sup>1)</sup>를 설치·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면표시는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과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1)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을 말하며, 구분은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로 구분함

」(2020. 3. 26. 개정, 경찰청),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1-2에 따르면 노면표시 반사 성능<sup>2)</sup>(이하 “휘도”라 한다) 기준은 [표]와 같이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 휘도 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의 2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 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노면표시의 휘도 기준

(단위 : mcd/(m<sup>2</sup>·lx))

조사각	관측각	구분	최소 반사성능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05°	설치 시 <sup>3)</sup>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 시	100	70	40	권장

자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재구성

아울러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업체는 최소한 휘도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를 발주청의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공사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5년 대한교통학회의 「시간경과에 따른 노면표시 반사성능과 교통사고와의 상관분석」에 따르면 휘도와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휘도가 200mcd/(m<sup>2</sup>·lx) 미만일 경우 200mcd/(m<sup>2</sup>·lx) 이상일 때에 비해 야간 교통사고 심각도 평균이 2.6배 증가(6.58→17.06)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휘도가 저하될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가와 관련된 빛의 양으로서 빛이 특정한 방향의 입체각을 통과하는 단위 면적당 광도(일정한 방향에서 물체 전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

3) 노면표시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반사 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함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 4월)에 서 비오는 밤에 시야에서 차선이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이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2016~2020년 5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총 71,350건(사망자 1,541명)으로 집계되어 우천 시 교통사고 치사율<sup>4)</sup>(2.2명)이 맑은 날(1.6명)보다 37.5% 높게 나타났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고흥군은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 대하여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할 때 노면표시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로부터 제출된 휘도검사 성적서의 내용이 90%가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과)은 2019년 9월부터 2022. 10월까지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명세”와 같이 총 51건의 공사 중 ○○ 군도00호선(○○○○~○○) 재포장공사 등 24건은 휘도검사 시험성적서가 없었고, 2020년 ○○○○~○○간 농어촌도로 000, 000호선 재포장공사는 휘도검사 기준 개수에 비해 측정 개소수가 부족한 성적서<sup>5)</sup>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처리 하였으며, 휘도검사 성적서가 확인된 27건 중 ○○ 군도00호선(○○~○○ ○○○) 재포장공사 등 8건의 경우에는 시공업체로부터 준공일 이후 성적서가 제출되었는데도 준공처리 하였다.

그로 인하여 고흥군은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한 ○○○○○(주) 등 16개 업체에 준공금(1,203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휘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24건의 공사는 야간 및 우천 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안전장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노면표시 설치가 포함된 공사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노면표시 기준에 맞게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 확인 후 준공처리 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4)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5) (휘도검사 제출 내역) 기준은 42개소, 휘도 측정은 26개소만 실시(16개소 부족 측정)

# 전라남도

## 훈계·주의요구

제 목 야영장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실)

훈계대상자 고흥군 ○○○○실 지방○○○○ ○○○(0000. 00. 00.)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표]와 같이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야영장업 등록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0개소 야영장에 대하여 등록증을 발급한 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표] 등록 야영장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18년 이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10	4	1	1	1	3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 현재까지 ○○○○실에서 야영장 관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관광진흥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야영장업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 등은 관광사업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

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7]에 따르면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고,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기준, 가스 사용기준, 대피 관련 기준,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위생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5호 차목과 타목에 따르면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sup>1)</sup>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표를 반기별로 제출받고, 사업자와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실)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야영장 운영·관리 명세”와 같이 영업 중인 0개소 야영장이 반기별 제출해야 할 안전점검표(매월 1회)를 제출하지 않고, 0개소 야영장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요원이 연 1

1)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 15일), 3차(사업정지 30일), 4차(등록 취소)

회 이상 이수해야 할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으며, 0개소 야영장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시 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야영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등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야영장 안전점검 미확인과 수질검사 일부 미실시 등의 야영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야영장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등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 등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소)

**내 용**

**1. 업무개요**

고흥군은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표 1] 과 같이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일반수도 사업 추진 현황(2020년 2월 ~ 2022년 7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총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계	4건	4,162	2,790	1,372			
○○ ○○ ○○○○ 개발사업	관로 5.748km	1,028	677	351	0000.00.00. ~ 0000.00.00.	주○○○○ (○○○)	인가
○○(○○,○○,○○) ○○○ ○○공사	관로 L=12.2km	1,540	924	616	0000.00.00. ~ 0000.00.00.	주○○○○ ○○○	회수
2020 ○○면 ○○○ ○○공사	관로 L=2.98km	606	407	199	0000.00.00. ~ 0000.00.00.	주○○○○ (○○○)	회수
○○읍 ○○○○ 도서지역 ○○○ 개발사업	관로 L=58.2km	988	782	206	0000.00.00. ~ 0000.00.00.	주○○○ (○○○)	회수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일반수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일반수도사업 시행 전에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소)은 0000. 00. 00. ○○ ○○ ○○○○ 개발사업 추진 시 도지사 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일반수도 국고 보조금을 사업 내용과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일반수도 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소)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추진한 3건의 일반수도 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회수가 필요한 현장은 [표 2]와 같다.

[표 2] 건설공사 미시공 공종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총공사비 (도급 + 관급)	지적내용	금액
계	3건			3,134,119	회수 13,109	
1	○○(○○,○○,○○) ○○○ ○○공사	0000.00.00. ~ 0000.00.00.	㈜○○○○ (○○○)	1,540,534	-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 미사용 등	4,065
2	2020 ○○면 ○○○ 교체공사	0000.00.00. ~ 0000.00.00.	㈜○○○○ (○○○)	605,802	-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 미사용 등	4,669
3	○○읍 ○○○○ ○○○○ ○○○ 개발사업	0000.00.00. ~ 0000.00.00.	㈜○○ (○○○)	987,783	-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 미사용 등	4,375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 1) ○○(○○, ○○, ○○) 상수도 급수공사

토공 1,866m<sup>3</sup>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로 다짐하지 않고 콤팩터 다짐을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065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 2) 2020 ○○면 노후관 교체공사

토공 641m<sup>3</sup>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램머로 다짐하지 않고 콤팩터로 다짐을 실

시하고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669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3) ○○읍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석분 227m³ 다짐 시 램머로 다짐하지 않고 콤팩터로 다짐을 실시하고, 구조  
물 시공 시 강관비계 94m³를 설치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를 제출하  
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375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  
았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 사업 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도지사 인가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3개의 일반수도 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109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유지관리·설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소)

**내 용**

**1. 업무개요**

고흥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표 1]과 같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2018년 1월 ~ 2022년 10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총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비			
계	4건	14,599	10,409	4,190			
○○읍 ○○마을 ○○○ 정비사업	오수관 L=1.78km (Q=100톤/일)	3,778	3,143	635	0000.00.00.~ 0000.00.00	○○○○○○ ○(주) (○○○)	변경 인가
○○ ○○마을 ○○○ 정비사업	오수관 L=1.50km (Q=110톤/일)	2,954	1,978	976	0000.00.00.~ 0000.00.00	㈜○○○○ (○○○)	변경 인가
○○면 ○○ 마을 ○○○ 정비사업	오수관 L=7.93km (Q=100톤/일)	5,295	3,670	1,625	0000.00.00.~ 0000.00.00	○○○○(주) (○○○)	감액
○○면 ○○○ 마을 ○○○ 정비사업	오수관 L=2.82km (Q=70톤/일)	2,572	1,618	954	0000.00.00.~ 0000.00.00	㈜○○○○ ○ (○○○)	회수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하수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공 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술진단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m<sup>3</sup>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하수관로의 경우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기술진단 대상인 하수관로 430.53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관리 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소)은 2022. 12. 1.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2017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430.5km에 대해 기술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2020년에 150.9km만 실시하고 279.6km(64.98%)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실시 현황

(단위 : km)

처리구역	연장	기술진단 대상관로	기술진단 실시여부			비고 (실시연도)
			실시	미실시	미도래	
계	430.5	430.5	150.9	279.6	0	
○○읍 처리구역	61.6	61.6	29.7	31.9	0	
○○읍 처리구역	42.7	42.7	42.7	0	0	(2020년)
○○면 처리구역	35.6	35.6	35.6	0	0	(2020년)

○○면 처리구역	43.3	43.3	0	43.3	0	
○○면 처리구역	45.3	45.3	0	45.3	0	
○○면 처리구역	17.2	17.2	17.2	0	0	(2020년)
○○면 처리구역	25.7	25.7	25.7	0	0	(2020년)
소규모 처리구역	159.1	159.1	0	159.1	0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매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 3. 하수도 설치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르면 준공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고흥군(○○○○○○소)은 2019년 10월부터 2022. 12. 1. 감사일 현재 까지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2개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설계에 과다 반영되어 감액 및 회수가 필요한 현장은 [표 3]과 같다.

[표 3] 건설공사 미시공 공종에 대한 미회수·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총공사비 (도급 + 관급)	지적내용	금액
계	2건			7,867,000	감액 18,371 회수 4,128	
1	○○면 ○○ 마을○○○정비사업	0000.00.00.~ 0000.00.00.	○○○○(주) (○○○)	5,295,000	- 토질조사(보링) 등 미시행	18,371 (감액)
2	○○면 ○○○ 마을○○○ 정비사업	0000.00.00.~ 0000.00.00.	㈜○○○○○○ (○○○)	2,572,000	- 계측기기 설치 및 관리비 정산 미실시 등	4,128 (회수)

자료 : 고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토질조사(보링) 시험 7공 중 5공만 실시하고 2공은 실시하지 않아 공사비 18,371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

2) ○○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측기기 설치 및 관리비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준공검사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128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관리상태 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공사비 18,371천원을 감액하고, 공사비 4,128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변경절차 미이행

관계기관(부서) 고흥군(○○○○○○소, ○○과)

훈계 대상자 고흥군 ○○면 지방○○○○ ○○○(0000. 00. 00.)  
(前 ○○○○○○소 지방○○○○○)

내 용

## 1. 업무개요

고흥군은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변경절차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지방○○○○ ○○○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소에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변경절차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 2.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sup>1)</sup>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7에 따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흥군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허가를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소)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별표 1]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와 같이 고흥군(○○과) 소유 농업용 지하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유효기간이 만료된 총 16개소 중 4개소만 원상복구 조치하고, 12개소<sup>2)</sup>는 변경절차 안내 및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 3. 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1)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2) 고흥군 6개소(○○과 1, ○○○○○○소 5), 개인 6개소(○○ ○○○○○ 3, ○○○○○ 2, ○○○○ 1)

또한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고,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감사 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고흥군은 2019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 절차 미이행’ 건으로 관련자 훈계 처분을 받고,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 28개소에 대해 지하수 연장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따라서 고흥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감사기관인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했다.

####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고흥군(○○○○○○소)은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별표 2] “2019년 지적사항 이행 명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28개소 중 9개소만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과 소유 농어업용 및 생활용수 17개소와 개인 소유 농어업용수 2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과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하수 17개소 중 6개소는 지하수 영향조사서<sup>3)</sup>를 2021년 2월경 ○○○○○소에 제출하였으나, ○○○○○소 연장 허가 업무 담당자<sup>4)</sup>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분실하여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3) 고흥군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통해 1차분 준공(과업량 / 용역비 : 6개소 / 23,209천원)으로 0000. 00. 00. 제출받음

4) 담당자 지방○○○○ ○○○

못하였고, 11개소는 지하수 수중 모터가 작동되지 않거나 등록 위치에 지하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3,209천원 예산을 낭비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고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 ① 2019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 지방○○○○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변경 절차 또는 원상복구 절차 등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